

朝鮮後期屯田研究

金 玉 根*

序 言

- | | |
|---------------|--------------|
| I. 營·衙門屯田의 設置 | 1) 無土屯田 |
| 1. 屯田設置의 背景 | 2) 有土屯田 |
| 2. 屯田濫設의 폐해 | ㄱ. 打租法 |
| 3. 屯田의 抑制 | ㄴ. 賭地法 |
| II. 屯田의 經營形態 | III. 屯田의 管理 |
| 1. 自耕制 經營 | IV. 屯田農民의 地位 |
| 2. 佃戶制 經營 | 結 言 |

序 言

「經國大典」이후의 조선전기에는 國屯田과 官屯田이 있었다. 이같은 前期屯田의 所有·經營構造의 특징은 國家 또는 국가의 分身인 地方官府에서 그 耕作權을 가지고, 軍兵또는 人吏·官奴婢의 노동으로 경작하여 全生物을 國家(또는 官府)가 취득하는 直營地(自耕地)라는데 있다. 그러나 壬亂後 조선후기의 屯田의 經濟關係에는 前期에 볼 수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壬辰亂 이후의 屯田은 有土屯田과 無土屯田으로 大別된다. 有土屯田은 前期의 官屯田과 같이 耕作權(保有權)이 各級 官府에 있는 土地이나, 전기와는 달리 官府에서 自耕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 대부분이 소위 佃戶經營地로서 產出高의 折半에 달하는 高率地代를 취득하는 小作方式으로 경영되었다. 無土屯田은 保有權이 농민(또는 民田地主)에 있는 土地로서 公田收租率에 따라 1結에 23斗의 結稅(租)를 징수하는 收租權을 官府에 移讓한 土地이며 屯田本然의 형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筆者는 本稿에서 조선후기에 이같이 變貌한 屯田을 대상으로하여 그 設置背景, 經營形態, 管理方式, 屯田農民의 地位에 관한 分析을 시도하였으나,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自認하면서 誤謬와 未洽한 부분에 대한 同學諸位의 叱正과 敎示를 바라마지 않는다.

I. 營·衙門屯田의 設置

I. 屯田設置의 背景

高麗時代에는 中央 및 地方의 各級官府에 公廩田을 割給하여 公共經費를 支辨토록 하였는데, 조선왕조도 그 초기에는 고려조의 전통을 踏襲하여 公廩田을 설정하고 이를 中央各

* 釜山水產大學 敎授

司와 地方官府에 분급하였다. 부연하면 鮮初에는 第Ⅰ型公田(假稱)으로서의 國庫收租地물稅物(地代形態)에 따라 布貨位田과 一般田地로 구분하여 이를 中央各司와 地方官府에 분급하였다¹⁾.各司에서는 割給된 公廩田의 收租로써 紙·筆·墨 등의 事務用品, 燃料(燈油·柴炭), 舖陳 및 官員의 書食 등에 사용하였다²⁾. 이같은各司位田制는 太宗 9年으로부터 부분적 改廢가 진행되어 오다가 世宗 27年 7월에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財政의 獨立收支原則에 입각한各司位田制에 內包된 이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州縣館驛의 公須田·衙祿田·官屯田을 제외하고 京中兩倉 및各司位田을 폐지하여 이를 모두 國用田으로 통합하고 각 郡縣에서 京中各司에 바칠 經常稅額을 計量하여 이를 郡縣民戶에 分定·輸納케 하고 나머지는 모두 郡縣의 官倉에 넣기로 하였다.

公廩田이 폐지된 원인은 ㉠ 國家收租地인 公田이 京中各司田과 外軍資位田으로 分屬되어 그 收入을 經常歲出에 充給하나, 年事의 豐歉에 따른各司歲入不足을 外軍資로써 補填하므로 계산이 번잡한 것과, ㉡ 農民이 米穀·蜜臘·布物 등을 稅物로 하여 바치는 田稅負擔에도 衡平을 기할 수 없는 것과, ㉢ 農民이 경작하는 土地가 筆地마다 소속관사가 달라지게 되는데에 기인하는 納稅의 불편 등에 있었다³⁾.

前此各道之田 分屬京中各司 及外軍資位田 以充恒貢之數 然逐年損實不同 故其不足者以外軍資推移充補 以此筭數甚煩 雖以眞法計之 筭數亦煩 今州郡驛館公衙公須等位田外 京中兩倉 及各司位田 一皆除之 並稱國用田 各其官 計京中各司所納恒數 分定民戶 使之輸納 其餘並入 其官國庫如是 則非徒筭數便易 民間米穀臘布貨 難易苦歇 庶得均平矣⁴⁾

이 改革으로 中央公廩田의 거제가 없어지고 존속한 것은 經國大典 戶典 諸田條에 수록된 特殊地目的 토지로서의 惠民署藥種田과 供上諸司藥田 뿐이다. 이처럼 世宗 27年에 中央公廩田은 혁파하였으나, 地方公廩田인 行政·教育·軍事·交通官府에 지급한 公須田·衙祿田·學田 및 官屯田 등은 존속되었다. 그런데 壬辰亂 이후에는 지방관부는 물론이고 京中의 各衙門 및 各營門(軍門)에서도 많은 토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를 各衙門·各營門屯土(屯田)라고 부른다. 원래 衛戍軍卒의 노동으로 경작되는 土地인 屯田이 변천을 거듭하여 成宗期에 이르러 經國大典에 鎭戍軍兵이나 官衛의 人吏·奴婢노동으로 경작하는 自耕無稅地라는 개념을 定立하게 되었다. 그러나 壬亂後 널리 設置된 各營·衙門屯田은 大典에 규정된 그러한 屯田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壬亂後 中央官府와 地方의 各級官府에서 設定한 屯土에는 ㉠ 中央行政官府에 소속되어 管理·經營되는 各衙門屯土와, ㉡ 中央 및 地方軍營에 소속되어 管理·經營되는 各營門屯土 및 ㉢ 國庫 또는 地方官府에 소속된 屯土가 있다⁵⁾.

1) 戶曹所屬收正五升布田 二萬二千一百三十二結 以代田定屬 其餘收米 工曹所屬 收白苧布 一百六十四 收以米 內府屬收正 五升布田 七千三百七十二結 收油田 六百二十二結 收苧布田 一千二百六十五結 以代田定屬 廣興倉收油田 三千三百結 收正五升布田二萬七千九百七十八結 皆收米(太宗實錄 卷1, 元年 5月 辛卯)

이 記事는 太宗 元年에 各 司布貨位田의 稅物의 일부 변경에 관한 것이다.

2)各司位田 蓋以備坐起日點心 及紙筆墨等事也(太宗實錄 卷 6, 3年 12月 壬申)

3)千寬宇, 韓國土地制度史 下「韓國文化史大系 Ⅱ 所收」p.1174 參照

4)世宗實錄 卷 109, 27年 7月 乙酉

5) ㉠ 各衙門屯田

耆老所屯 宗親府屯 議政府屯 敦寧府屯 忠勳府屯 義禁府屯 戶曹屯 賑恤廳屯 均役廳屯 奎章閣屯 奉常寺屯 司饗院屯 司僕寺屯 軍器寺屯 掌樂院屯 繕工監屯 水庫署屯 典牲署屯 司畜署屯 內資寺屯 內贖寺屯 掌苑署屯 司圃署屯 活人署屯 惠民署屯

㉡ 各營門屯田

訓練都監屯 糧餉廳屯 禁衛營屯 御營廳屯 摠設廳屯 龍虎營屯 壯勇營屯 武衛營屯 監營屯 總理營

欄外에 기재한 세가지 類型의 屯田 가운데 津夫屯 氷庫屯 司圍署屯 耆老所屯 烽台屯 官屯 驛官屯 各鎮屯(兵·水營屯 鎮堡屯 山城屯)은 王朝前期에도 있었던 것으로 그 組織 혹은 명칭을 변경한데 불과하며 그 나머지의 것은 모두 壬辰亂 후에 신설된 것이다.

經亂後 營·衙門屯田이 크게 확대된 원인은 亂後에 加速的으로 진행된 財政窮乏이다. 부연하면 壬辰亂 이후 있다라 발생한 外寇·內亂으로 많은 營門(軍門)과 衙門이 신설되는 반면에 田稅를 大宗으로 하는 歲收가 감축되어 신설관부에 대한 國庫支給이 어렵게 되었고 이러한 狀況에서 新設營·衙門에서는 그 財源確保를 위한 궁역지책으로서 閑曠地 또는 民田을 折受받아 屯田을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新設官府에서 잇달아 屯田을 設定하자 財政難에 직면한 既存官府들도 屯田設定의 時代的 風潮에 편승하며 앞을 다투어 屯田을 設定하게 되었다.

肅宗 3年 11월에 獻納 沈堧이 啓에서, 壬辰亂 이후 신설된 訓練都監의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各處의 民田을 募入하여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公賦(田稅) 등을 免除하는 屯田으로 삼고 訓練都監으로 하여금 1負에 皮穀 6~7升씩을 징세케 하였는데 國家에 부담하는 公賦에 대해 훈련도감에 바치는 屯稅의 부담이 가벼웠기 때문에 많은 農民이 이에 應하였다. 그런데 近來에는 다수의 軍門이 수익을 얻기 위해 혹은 給價買土하여 설정한 屯田이 中外에 깔려있고 民間의 慣行에 따라 並作形態로 경영하고 있다고 한 것이나,

壬辰亂後 新設訓局 軍儲難辦 故募入民田 俾免公賦 屬於屯田 每卜所捧之數 毋過皮穀六七升 比諸公賦而差輕 故民皆樂從矣 換近以來 軍兵衙門甚多 廣占規利 或給價而買土 設而屯田者 蕃布中外 一依閭里並作之例……⁶⁾

肅宗 6年에 李敏叙가 啓에서, 仁祖丙子亂이 끝난 후 國勢가 약화되어 軍府를 增設하였으나 國庫逼迫으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各軍門에서는 屯田을 設定하여 逃戶를 모으며 土地를 廣占하여 오직 收奪에만 힘쓰고 있다고 한 것은 壬亂後 營門屯田이 널리 설치된 背景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自仁祖改之後 國勢單弱 南北有虞 增置軍府 重臣擲領 而國儲虛匱 不能供給 爲軍府者 各設屯田 收聚逋逃 廣占山峽 甚至恣行攘奪 唯務聚斂 到今五六十年之間……⁷⁾

壬亂後 衙門屯田이 설정된 背景에 관해서는 肅宗 14年 領議政 南九萬의 啓辭에 잘 설명되어 있다. 즉 祖宗朝 이래 혹 官田이나 沒入屬公田을 賜給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를 折受한 例가 없다. 經亂後 人口가 감축되고 土地가 荒廢된 狀況 아래 王子·翁主가 잇달아 出嫁함에 따라 이들에게 土地가 賜與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戶曹判書 韓應寅이 禮賓寺에 소속된 百官宣飯과 倭人과 野人을 接待하는데 소요되는 魚·鹽·柴·炭 등을 얻을 수 있는 土地를 이들에게 割給하였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善策이었으나 後日에 土地折受의 謬規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다⁸⁾. 이처럼 壬辰亂 이후 國家財政이 극도로 궁핍해진

屯 守禦廳屯 管理營屯 鎮撫營屯 統制營屯 兵營屯 防禦營屯 鎮營屯 鎮堡屯 山城屯

③ 기타의 屯田

砲軍屯 義僧屯 津夫屯 軍田 烽台屯 撥所屯 史庫屯 欄護軍屯

(A) 和田一郎, (朝鮮總督府) 朝鮮土地制度及地稅制度 調査報告書. p.295-6

(B) 水田直昌, (朝鮮總督府) 李朝時代の 財政 p.85-6.

6) 備邊司謄錄 景宗 3年 11月 20日

7) 增補文獻備考 田賦考 5, 肅宗 6年 李敏叙 啓

8) 祖宗朝以來 本無田土折受之事 而如有官田 及沒入屬公之地 則賜與之規 宣廟壬辰亂後 人民稀少 極目陳荒 而王子翁主 相繼出閣 無可賜與之田土 故相臣韓應寅 時爲戶曹判書 以禮賓寺所屬 百官宣飯 及倭野人接待所用 魚鹽柴炭等物 所出之地 割而與之 其時以爲善於變通 而仍成後來折受之謬規……(增補文獻備考 田賦考 4, 肅宗 14年 領議政 南九萬 啓)

鄭昌烈, 朝鮮後期の 屯田에 對하여 參照

가운데 各營門·各衙門에서는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널리 屯土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純祖 7年(1807年) 현재 各營·衙門이 가진 免稅結만 하더라도 46,104結에 달하며 여기에 出稅結과 各鎭屯田 등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表-1〉은 各營·衙門屯土를 그 所在郡縣別로 明示하고 있는 度支田賦考 (6) (1797年)에 의거하여 主要營·衙門의 郡縣別 屯土分布를 작성한 것이다. 表에서 보드시피 한 官衙의 屯土가 소수의 特定郡縣에 집중되어 있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 郡縣內에 수 百結의 屯土를 가진 官衙가 허다하다. 특히 司僕寺의 揚州屯田은 1,622結에 달하며, 均役廳의 平壤屯田과 安州屯田은 각각 1,228結, 1,697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各營·衙門의 量案을 일별해보면 屯土가 한 郡縣內에서도 自然村落을 中心으로 集中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한 官衙의 屯土가 各郡縣에 수 結씩 소규모로 散在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마는 대개의 경우 自然村落을 中心으로 一圓의으로 집중되어 있다.

〈表-1〉 各營·衙門屯土의 分布

宗親府			議政府			敦寧府			摠戎廳			奉常寺			司饗院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沃川	33.63.0	揚州	68.95.7	全州	150.0.0	開城府	22.05.0	廣州	3.08.6	揚根	3.36.6						
淳昌	564.24.6	康翎	1.04.0	益山	50.00	揚州	134.44.7	開城府	85.45.0	禮泉	255.47.8						
務安	194.16.7			臨陂	150.00	長湍	25.57.8	揚州	96.59.6								
				威悅	50.00	高陽	14.74.2	類陽	20.19.5								
						載寧	2.93.2										
尙衣府			司僕寺			司圃署			典牲署			司畜署			均役廳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所在地	結·負·束		
廣州	2.48.8	水原	282.51.6	廣州	18.56.7	廣州	204.51.7	廣州	51.45.7	水原	66.03.8						
		江華	298.86.2	開城	40.81.4					揚州	170.04.1						
開城府	71.23.1	揚州	1622.06.5	揚州	53.97.6					坡州	101.06.7						
		振威	3.46.3	豐德	12.67.2					公州	371.76.9						
揚州	0.29.6	忠州	27.78.4	高陽	11.40.3					洪州	130.75.0						
		洪州	281.01.2	始興	11.76.0					全州	86.40.6						
		泰安	189.48.5	露岩	157.64.4					光州	44.00.0						
		晉州	342.49.8	錦山	408.70.1					大丘	329.02.0						
		蔚山	85.41.4	谷城	389.45.2					尙州	160.50.6						
		金海	5.43.2	咸平	291.46.7					原州	225.88.2						
		巨濟	395.32.7	鎭安	440.32.2					江陵	143.25.4						
		鐵山	297.26.8	康津	17.20.9					平壤	1,228.06.0						
		以下省略		長湍	12.17.2					定州	371.55.8						
										安州	1,697.95.0						
										以下省略							

資料：度支田賦考 6 正祖 12年(1797)

2. 屯田濫設의 폐해

各營·衙門에서 屯田을 설치하는 방법에는 ㉠ 閑曠地의 折受⁹⁾, ㉡ 民田의 折受·投托¹⁰⁾

㉠ 籍沒田의 折受¹¹⁾, ㉡ 民田의 買入¹²⁾, ㉢ 他官署土地의 移屬¹³⁾ 등이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無主陳荒地의 折受와 民田折受(民田收租權의 移讓)의 方法이 채택되었다. 經亂後 各營·衙門에서는 이같은 方法으로 경쟁적으로 各自의 屯田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막심한 피해가 수반하였다.

屯田의 濫設·擴大過程에서 일어난 피해 가운데 먼저 지적할 것은 民田侵奪의 피해이다. 顯宗 3年 11월에 常令 郭齊華 등은 無主陳荒地의 折受에 의거한 民田侵奪의 피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戰亂이 終熄된지가 오래되고 人口가 증가하여 寸土尺地도 다 개간되어 無主陳荒地가 거의 없다. 간혹 片片이 있는 陳荒地를 無主地라는 구실로 折受하여 그 주위에 있는 民田을 呑食하고 있다.

所謂無陳荒地 尤爲無據 去亂既久 人物蕃庶 寸土地 開墾殆盡 間或有片片陳荒 則諉以無主物折受 東并西吞 終至於呑食民田 病民痛弊¹⁴⁾

顯宗 4年에 執義 鄭繼胃도 啓에서, 諸官家 各衙門 및 士大夫들이 無主陳荒을 빙자한 折受에 의거하여 많은 有主民田을 奪取하고 있는 實況을 밝히고 侵奪民田의 還給과 折受 禁斷을 요구하고 있다¹⁵⁾. 戰亂의 피해가 復舊되고 離散한 農民들이 농토로 復歸하고 人口가 증가함에 따라 無主陳荒地나 閑曠地가 稀少해졌으므로 折受에 의한 民田侵奪의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우심해졌다. 肅宗 14年에 領議政 南九萬의 辭啓에, 이미 「寸土尺地」도 모두 개간되어 1畝의 閑曠之地도 없기 때문에 民田을 탈취하는 方法의에는 獲得할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잇달아 折受가 감행되어 農民의 抗拒를 빚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9) ㉠ 閑曠地折受의 事例

湄母山城相望之處 有所謂德池筒者 管餉屯田 而幅圓甚廣 不能盡墾……即今 監司李世載多得募軍 漸次開墾 今則幾至二百石落種 而未開墾者 尙餘百石落種之地(備邊司謄錄 肅宗 29年 8月 10日 禮曹判書 閔鎮厚 啓)

10) ㉡ 民田折受·投托의 事例

「折受」

前略 則牙山·稷山等地所在 成均館位田 流來收稅 依他民結例 二十三斗收捧矣。(備邊司謄錄 英祖 21年 1月 20日)

「投托」

統營屯田 初因之餉 只設於閑曠之地 其後漸及於沿海 及於內地 其弊罔有紀極 耕食元田者 投入於屯所 以爲免稅之地 所謂屯田 無處不有 稅入日縮 民役不均 職由於此(仁祖宗錄 卷 34, 7年 9月 丙午)

11) ㉢ 籍沒田折受의 事例

(都承旨) 趙錫命 以宗簿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本寺清寒特甚 不成貌樣 而他無着手處 故壬寅年 逆家田番二百結 奴婢一百口 劃給事 陳達蒙允(承政院日記 英祖 8年 4月 11日)

今般逆家 籍沒田番之歸於地部者 其數夥然 就其中三百結 移屬都監之糧餉廳……(英祖實錄 卷 43, 31年 4月 乙巳)

12) 民田買入의 事例

禁營新買得 載寧田番 限五年 姑爲免稅(備邊司謄錄 肅宗 44年 10月 16日)

訓局則有買得者 或有屬公田番 其中民田之冒屬 收稅者亦多 如此之類 不可不爲先革罷(備邊司謄錄 顯宗 5年 11月 28日) 李聖龍 以守禦廳啓曰 去戊戌年間 京居人姜遇文 有本廳負債 代以德山田番二十一結十八負 願爲代納折價計執(承政院日記 英祖 8年 3月 26日)

13) ㉣ 他官署土地 移屬의 事例

永宗鎮之設置 蓋以關防之重 本鎮近處 諸島牧場 宮家衙門折受 並皆移給 則大學設有久遠折受之地 揆以即今形勢 永宗鎮之移給於紫燕島者 蓋以江都門戶之地 太僕牧場 全數移屬 且其近處諸宮家衙門 自前收稅之地 亦皆移給 自備局事日啓下(備邊司謄錄 肅宗 16年 5月 30日)

14) 承政院日記 顯宗 3年 3月 23日

15) 山田海澤 近來形勢之家 稱以無主 廣占橫侵 至於有主民田 太平見奪 民將無以爲生 請諸宮家 各衙門士大夫 山田海澤陳荒立案處 害及生民之類 詢問諸道 盡爲革罷 自今以後 一切禁斷(顯宗改修實錄 卷 39, 4年 4月 庚子 執義 鄭繼胃 啓)

肅宗期에는 折受의 피해가 그 극에 달하고 있었던 사실을 立證하는 것이다¹⁶⁾.

量案이 未備되고 또한 漏脫된 土地가 적지 않은 당시의 실정으로 미루어 各營·衙門에서 立案 折受한 無主陳荒地의 대부분은 이미 농민들이 개간 경작하는 有主 民田인 것이다. 그리고 假令 無主陳荒地를 折受받는다 고 할지라도 일단 屯田이 설치되면 各營·衙門은 莫強한 權力을 背景으로 하며 周圍에 있는 民田을 잠식하게 되므로 거기에서도 民田侵奪의 피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피해는 屯田擴大가 國庫의 歲入減縮을 가져오는 것이다. 壬辰亂 이후 各營·衙門屯田의 設定·膨脹는 宮庄土와 같은 軌道에서 進行되었다. 各官房과 營·衙門에서 경쟁적으로 屯田을 설치한 결과 이미 孝宗 10년에 「無稅之田 將遍國中」¹⁷⁾이라고 表現할 정도로 擴大되었고, 顯宗 11年 1月 戶曹判書 閔鼎重은, 各衙門 및 諸宮實의 免稅田이 土地의 거의 折半을 차지하며 戶曹歲入이 불과 10餘萬石으로 감축되었다고 개탄하였다.¹⁸⁾ 특히 合法的인 土地折受의에 當事者 쌍방의 합의로써 실현되는 民田投托과 良丁投屬은 中央財政의 歲入減縮을 가져올 뿐 아니라 良役부담의 불균형을 비롯한 중대한 社會問題를 유발하였다. 仁祖 7年 9月 戶曹에서는 民田投托의 피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3道水軍을 統轄하는 慶尙道 統營郡所在의 統制使屯田은 처음에는 閑曠地에만 설치되었으나 점차로 沿海와 內地로 확대되어 그 피해가 막심하며, 國庫收稅地인 民田(元田)의 耕作者가 그 土地를 屯所에 投入하여 免稅地로 만들고 있으므로 稅收가 날로 감축되고 民役이 不均해지고 있으니 屯田을 감축해야 한다¹⁹⁾. 그리고 良丁投屬의 피해에 관하여 肅宗 8年 4月 獻納 金云鼎은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管理廳소속의 黃海道 各鎮屯田에 流民은 거의 없고 各邑元戶의 避役投屬者가 8-9割을 차지하며, 또 避役投屬者에게 1人當 5名씩 保人을 定給하고 있기 때문에 郡邑의 閑丁이 모두 各鎮屯田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各鎮將吏가 恣意的으로 課役하는 각종 부역노동에 혹사당하는 무거운 부담에 견디지 못하여 심지어 村民이 모두 逃散하는 마을도 있다²⁰⁾. 이같은 피해를 가져오는 民田投托과 良丁投屬은 특히 營門(軍門)屯田에서 우심하였으나, 宮庄土와 衙門屯土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17世紀 초기로부터 급속히 확대되어가는 屯田은 民田의 侵奪, 屯民收奪을 비롯한 막심한 民弊를 가져올 뿐 아니라 國庫收稅地의 감축을 가져왔다. 특히 屯田의 확대에 따른 國庫收稅地의 감축은 國家財政의 岌박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었다. 부연하면 朝鮮後期에 國家財政을 주관한 兩大官司인 戶曹와 宣惠廳에 田稅와 大同稅를 부담하는 수 萬結에 달하는 民田이 折受·投托·奪取 買入 등의 방법으로 司宮과 營·衙門에 吸收됨에 따

16) 厥後廣占之弊 又復如前 今人民繁殖 比之壬子年間 又不啻倍蓰 山峽之間 海澤之濱 寸土尺地 皆已起耕 實無一畝閑曠之處 事勢到此 則白奪民田之外 決無可得之地 以此上今年諸道折受 不知其幾處 而邑民擊錚 道臣狀聞 臺諫論啓 不勝其紛紜 聖明亦不忍 民人之呼冤 悉使還給 故徒致諸道騷擾之弊 (增補文獻備考 田賦考 4, 肅宗 14年 領議政 南九萬 奏)

鄭昌烈, 前揭論文 參照

17) 孝宗實錄 卷 21, 10年 3月 諫院 啓

18) 各衙門屯田 諸宮家設庄免稅 幾半國中 祖宗朝田結收稅者 皆入其中 故地部歲入 歲僅十餘萬石(顯宗實錄 卷 38, 11年 1月 庚寅)

19) 統營屯田 初因乏餉 只設於閑曠之地 其後漸及於沿海 及於岡地 其弊罔有紀極 耕食元田者 投入於屯所 以爲免稅之地 所謂屯田 無處不有 稅入日縮 民役不均 職田於此 若不變通 弊將難救 依李舜臣設屯之意 只設於沿海稍近之地 而其他遠近屯田 則量宜革罷(仁祖實錄 卷 21, 7年 9月 丙午)

20) 管理廳所屬海西屯田 新設鎮將之處 一邑之內 多者或至四五鎮 軍本以流民應募 而各邑元戶 避役投屬者 十居八九 又於每名 各給五保 郡邑閑丁 盡在其中 各鎮將吏 各自營建廩宇 擅發役夫 侵虐多門 闔境騷然 民不堪命 至有舉一村 逃散之處(備邊司謄錄 肅宗 8年 4月 4日)

라 國庫逼迫은 더해갔던 것이다.

3. 屯田의 抑制

前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衙門屯土의 확대는 國庫收稅地를 감축시켜 財政逼迫을 초래할 뿐 아니라 막대한 民弊를 가져왔던 것이므로 仁祖朝 이후 封建支配層의 內部에서 司官庄土와 營·衙門屯土를 抑制하자는 輿論이 漸高해가는 가운데 一連의 抑制策이 採擇되어갔던 것이다. 營·衙門屯田의 抑制는 課稅政策과 折受政策의 두가지 側面에서 進行되었다.

먼저 課稅政策을 통한 抑制에 관하여 살펴보면 各營·衙門屯田은 초기에는 田稅 大同 등의 結稅가 면제되는 免賦免稅地였다. 그런데 仁祖 4年에 이르러 이같은 屯土課稅制度를 일부 변경하여 忠勳府屯 司僕寺屯 및 備邊司屯에 田稅를 부과하고 大同을 免稅키로 하였다. 그후 英祖 34年 4월에 戶曹判書 李宗白의 건의에 따라 各營·衙門屯田을 出稅免賦地로 확정하여 大同은 면제하되 田稅는 모두 부과하기로 하였다.

各軍門各衙門 免稅之數 至於二萬二千餘結之多 一依屯田之例 免賦出稅 誠合事宜 下詢大臣而處之 左議政金曰 田之有稅 有國之大政也 比之大同尤重 戶判所奏誠是矣 上曰依爲之²¹⁾

史料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各營·衙門屯土의 총결수는 2萬 2千餘結이었다. 正祖 9年에頒布된 大典通編 戶典에,

「各營門各衙門屯田 免賦出稅」

라한 규정은 英祖 34年의 受判에 의거한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그 후 純祖 8年에 발간한 萬機要覽 財用篇 2 免稅條에,

各衙門免稅 毋過定限 而各營門各衙門屯田 并免賦出稅

라 하고, 그 註解部分에,

戊寅因戶曹判書李宗白筵稟 各衙門免稅之數甚多 稅入漸縮 依屯田例 免賦出稅事定式

〈表-2〉 各營門·各衙門免賦稅地(純祖 7年)

官 衙 名	結·負·束	官 衙 名	結·負·束
議 政 府	69.96.1	奉 常 寺	205.32.7
宗 親 府	792.04.3	司 饗 院	258.78.4
敦 寧 府	400.00.0	司 圃 署	209.26.3
忠 勳 府	1414.17.9	內 醫 院	9.34.1
耆 老 所	1561.75.0	尙 衣 院	74.01.5
均 役 廳	2307.44.9	內 贍 寺	3.00.0
訓 鍊 都 監	3330.30.1	繕 工 監	31.64.7
禁 衛 營	18.25.3	水 庫	16:98.5
御 營 廳	7.86.2	掌 苑 署	1110.6.9
摠 戎 廳	194.74.9	典 牲 署	20.51.7
成 均 館	531.10.1	司 畜 署	51.45.7
四 學	39.19.1	惠 民 署	3.41.6
司 僕 寺	11687.07.0	內 農 圃	72.24.9
合 計		46,104結 97負 9束	

資料：萬機要覽 財用篇 2. 免稅條

21) 備邊司謄錄 英祖 34年 4月 19日

而見存衙門 以定式前折受仍舊免稅²²⁾

라 한 것으로 보아 戊寅年 즉 英祖 34년에 李宗白의 건의에 따른 出稅規定은 그 前에 이미 折受한 營·衙門屯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戊寅年 이후에 折受하는 屯田에만 적용기로 한 것이 分明하다. 그러므로 純祖 7년의 實績을 기록한 萬機要覽에 各營·衙門의 免稅田 즉 田稅 大同을 免除한 免賦稅田이 <表-2>에서 보드시피 46,104結 97負 9束에 달하고 있다. 萬機要覽에 載錄되어 있지 않는 官屯田 各鎮屯田 및 田稅를 부과하는 出稅 免賦地를 합한 屯田의 총결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屯土免稅措置를 철회한 英祖 34년 현재의 營·衙門免稅田結數가 2萬2千餘結이었던 것이 純祖 7년에 4萬6千餘結로 倍增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免稅철폐규정이 제대로 遵守되지 않았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折受革罷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壬辰後 各營門 各衙門의 土地折受는 官房의 土地折受와 같은 軌道에서 진행되었는데, 官房의 토지결수가 자아낸 폐단이 더욱 자심했기 때문에 官僚들에 의한 折受反對는 주로 司官庄土를 겨냥하여 전개되어 갔다. 그러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營·衙門의 土地折受도 國庫歲入減縮과 民田侵奪 등 막심한 폐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벌써 17世紀 초기로부터 官房折受와 함께 營·衙門折受革罷論이 대두하였고, 肅宗 3年 4月에는 國王 自身도 營·衙門屯田의 폐해를 우려하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是認하였다²³⁾. 그런데 營·衙門屯田의 折受革罷가 官房田의 折受革罷→ 給價買庄制의 確立過程에서 실현된 것이므로 官房田의 折受制限→折受革罷→結價買庄制의 실현과정을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

孝宗·顯宗·肅宗期는 官房田의 折受制限 내지 혁파문제를 둘러싸고 국왕과 관료간에 對立과 논쟁이 전개된 시기이다. 官庄土는 職田制가 폐지된 王朝後期에 王室財政과 大君王子 公主 翁主 등 왕족들을 위하여 設定된 것이므로 歷代國王이 그 억제력을 꺼려하는 反面에 관료들은 稅收減縮과 民弊를 막기 위하여 이를 억제할 것을 끈덕지게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孝宗 10年 3月, 孝宗은 職田法에 따라서 官房免稅結을 제한하고 定額을 초과하는 數外結에 課稅할 것을 요청한 司諫院의 건의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²⁴⁾. 그러나 이같은 원칙적인 決定만 하고 施行에 필요한 구체적인 事項을 決定하지 못한채 孝宗은 그 다음달에 死去하였다. 이로부터 4年後 顯宗 3年 7月 13日 鐘中에서 元斗杓가 免稅折受制를 폐지하고, 大君·王子職田制의 復設을 건의하였으나, 孝宗이 이를 拒絕하자²⁵⁾ 南九萬은 한 宮家の 免稅田이 많은 경우 1400餘結에 달하며 中邑의 全田結數와 거의 같으니 民怨이 높으므로 早速히 定限하자고 촉구하였다²⁶⁾. 이같은 관료들의 끈덕진 요구에 따라 顯宗은 그 다음달 8月 23日 熙政堂에서 備局諸臣을 引見한 자리에서 官房免稅結을 600結로 定限하자고 계의하였다. 이 顯宗의 계의에 대하여 趙復陽이 600結이 과다하다는 見解를 表明하자 顯宗

22) 萬機要覽 財用篇 2免稅條

23) 上曰 各衙門屯田 病民之弊 人皆言之 畢竟不可不變通矣(備邊司藤錄 肅宗 3年 4月 2日)

24) 宮家免稅田 自有國家定制 而法網峻夷 漸至踰濫 近日諸宮家 外方設庄 爲弊已極 廣占沃土 包羅山澤者 在處皆然 此豈盛世之所宜有哉 況不問結數之多少 一切免稅 罔有限量 無稅之田 將遍國中 使國體日損 公法日壞 而稅入之所以縮 民怨之所以滋者 莫不由此 請令該曹一一查正 其免稅數 依典折給 而數外之田 收稅應役 與齊民一體施行 上從之(孝宗實錄 卷 21, 10年 3月 己卯)

25) 罷免稅 復職田事啓達矣 今日諸宰入侍 稟定何如 上曰 職田與免稅 自是別事 何以混稱耶(顯宗實錄 卷 5, 3年 7月 甲申)

26) 臣聞一宮家免稅 或至一千四百餘結 云此則中邑結數也 如此而豈無民怨 速爲定結(顯宗實錄 卷 5, 3年 7月 甲申)

은 600結이 안되면 중전대로 放任해두고 개혁하지 않겠으니 兩者擇一이라고 威脅하였다²⁷⁾ 이리하여 同年 9月 4日에 顯宗은 역시 熙政堂에서 관료들을引見한 자리에서 大君 公主는 500結, 王子 翁主는 350結씩으로 각각 定限하고 折受土地 가운데 陳結은 모두 實結로써 充給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吏曹判書 洪命夏와 司諫 李敏迪은 500結도 역시 과다하다고 하였다²⁸⁾. 國王과 관료들간에 장기간 논란이 계속된 結數定限問題는 드디어 顯宗 4年 (1665) 4月 13日 國王이 일보 양보함으로써 大君 公主 400結, 王子 翁主 250結씩으로 각각 定限하는 決定을 보게 되었다²⁹⁾. 이 定限結數는 다수 관료들이 요청한 職田規定의 大君 250結, 王子 180結에 비교하면 훨씬 많은 것이다. 그러나 免稅結數를 定限한 것은 官房田의 無制限의 확대에 制動을 걸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官房免稅結數를 定限한 것은 一步前進이라 하겠으나, 그 후에도 官房과 營衙門折受에 의한 民田侵奪의 폐해는 근절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顯宗 7年 2月에 全羅道監司 閔維重은 宮家折受에 의한 民田奪占을 지탄하는 狀啓를 썼으며³⁰⁾ 肅宗 14年 4月에 領議政 南九萬을 드디어 折受制의 革罷를 요청하였다.

今後天佑宗社 龜宮家斯有慶 本支繁衍 新宮無限 則未知朝家 將於何處折得 無限田結 而不至於民田之見奪耶 或依祖宗朝 職田結數 以出稅之米 劃給如法典所載 而此若難行 則亦宜更思 善處之道 至於折受之規 終不可仍行於日後矣³¹⁾

즉 그는 앞으로 신설될 宮家는 無限한데 折給할 土地는 없고, 民田侵奪을 免할 수 없으므로 法典所載의 職田結數에 따라 宮家에 稅米를 지급해주면 이 職田稅가 難行이라던 다른 變通을 하더라도 折受制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같은 南九萬의 건의에 대하여 肅宗은 折受制를 갑자기 폐지하면 新設官房이 곤란하게 되므로 어떤 對策을 請求한 연후에 變通이 가능하다고 하였다³²⁾.

同年 12月 3日 次對에서 領議政 金壽興은, 관료들의 견해가 職田制의 復行은 어렵고, 折受制의 革罷變動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宮家에 土地購入代金을 지급하여 買庄케하는 것이 上策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給價額을 얼마로 策定할 것이냐는 肅宗의 물음에 대해 金壽興은 大君 公主는 4千兩, 王子 翁主는 3千兩으로 定額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肅宗은 大君 公主에 5千兩 王子 翁主에 3千兩씩을 지급하는 것이 可하다고 하였다.

領議政金壽興曰 職田之制 因大臣陳達 有問議稟行之命 而諸議皆以爲猝難復行 此法難行 而折受革罷 則不可無變通之道矣 宜令該曹給宮家 使之買庄最爲便好 上曰 給價之數 當以幾何爲定耶 壽興曰 大君公主則四千兩 王子翁主則三千兩爲定矣 上復曰 大君公主則給五千 王子翁主則給三千可也³³⁾

이로써 給價買庄制가 채택된 것이다. 그런데 承政院日記 肅宗 14年 12月 7日條의 記事에는,

上曰大君公主 則給五千兩 王子翁主 則給四千兩 永爲定式 以相訟田畝 賣於宮家者 格別

27) 顯宗實錄 卷 5 3年 8月 乙未

28) 顯宗實錄 卷 6, 3年 9月 乙亥

29) 承政院日記 顯宗 4年 4月 13日. 顯宗實錄 卷 6, 4年 4月 庚戌

30) 道內民田量案無主 及量外加耕處 盡爲諸宮家折受 凡爭訟田土者 一則曾受立案 一則渠自開墾 則退斥立案 決給開墾者 乃是聽訟之通例 今若於宮家 不計開墾之久 惟以無主爲證 並許奪占 則不但民怨可矜(顯宗改修實錄 卷 14, 7年 2月 丁未)

31) 增補文獻備考 田賦考 4 肅宗 14年條.

32) 上曰 不思善後之道 而折受猝然革罷 則新設宮家 將未免狼狽 令廟堂講永善處之道 然後稟定變通可也(肅宗實錄 卷 19, 14年 4月 乙丑)

33) 肅宗實錄 卷 19. 14年 12月 壬寅

論罪 申明立法可也

라 하여 王子翁主에 대한 給價額이 4千兩으로 되어있고, 또 增補文獻備考 田賦考 4, 肅宗 14年 條에도 역시 4千兩으로 되어 있다. 이 두 記事로서 추측할 때 12月 3日 筵中에서 3千兩으로 결정한 것을 4日 後인 7日에 4千兩으로 변경한 것으로 믿는다.

이 給價買庄制는 宮家에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후 給價制와 職田制를 折衷하게 되었다. 즉 肅宗 21年 7月 23日 筵中에서 左議政 柳尙運의 제의에 따라 신설궁가에 庄土購入代金을 지급하되 折受免稅의 限度를 200結로 定하고 庄土를 구입할 때까지 200結에 대한 公稅條(田稅 三千米 大同米)로 1結에 23斗씩을 國庫에서 宮家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이 宮房無土免稅地의 淵源이다³⁴⁾. 이 無土免稅地를 各郡邑에 輪番制로 設定하여 宮房에서 收稅토록 하였다. 그런데 民田收稅地인 無土免稅地에 대한 規外濫徵을 비롯한 宮房導掌의 作弊가 자심했기 때문에³⁵⁾ 正祖 元년에 이에 대한 導掌差送制를 폐지하고 當該郡邑에서 收稅하여 戶曹에 바치던 거기서 宮房에 지급하는 官收官給制로 收稅規定을 변경하였는데³⁶⁾ 이 규정이 그 후에 분포된 大典通編에 수록되어 있다.

給價買庄制가 실시됨에 따라 庄土購入代金을 지급받게된 新設宮家は 買入對象地를 選定하여 戶曹에 신청하면 거기서 토지를 檢審한 다음 免稅措置를 취하는 順序로 되어 있는데 이 有土免稅地는 京畿道에 宮房에 귀속된 토지이므로 1結에 200斗(皮穀)씩 收租토록 하였으나,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民田의 小作慣行에 따라 收租率이 수확고의 1/2에 달하였다. 이상 論究한 바와 같이 顯宗→肅宗朝에 걸쳐 宮房免稅結의 制限→折受制의 章罷→給價買土制의 채용으로 中宗에 折受의 方法으로 無定限的 膨脹을 거듭해온 宮房田은 법제적으로 制限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論題를 벗어나 宮房折受制의 革罷와 給價買土制의 확립에 關係 장황하게 言及한 이유는 이 施策이 宮房 뿐만 아니고 營·衙門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增補文獻備考 田賦考 4, 肅宗 14年 條에 수록된 折受革罷에 關한 記事에, 今後 宮房折受를 금지하고 職田法에 따라 給價買土制를 실시하는 동시에 各營·衙門折受도 아울러 금지한다고 한 것이나³⁷⁾ 또한 肅宗 14年의 備邊司啓目에 戊辰年(숙종 14年) 이후부터 諸宮家和 各衙門에 대한 모든 折受를 혁파하고 戶曹에서 給銀하여 토지를 買得게 한다고 云云하고 있는 것은 折受革罷와 買土制가 營衙門에도 적용된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肅宗) 三十四年 備邊司啓目 諸宮家各衙門 戊辰以後 折受一併革罷後 自戶曹給銀使之 買得 此後則永勿折受 乙亥年擯前定奪 而其後折受處 又爲夥然³⁸⁾

이처럼 肅宗 14年에 折受制를 혁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各宮房 및 各營·衙門에 대한

34) 尙運仍陳 宮家折受事曰 每宮二百結折受 乃是定式 而今則過於定限者甚多 若於二百結 定限之外 盡爲革罷 自朝家量給 米布銀貨 使該宮自備庄土 得以成樣則好矣 (右議政申) 翼相亦贊之 又曰所給二百結 則必以實結支給 此外切勿許折受可也 尙運曰 庄土未備之前 限年賜以公賦說 則公私俱便矣 刑曹判書 閔鎮長曰 二百結則使之自擇好處可矣 尙運又曰 壽進 明禮 於義 龍潤 則事體異於他宮事 曾有別判付矣 此四宮及明善明惠兩房 則以戊辰年(肅宗十四年)爲限 戊辰以前折受處則仍存 以後折受則盡爲革罷似好 上皆從之(肅廟實錄 卷 29, 21年 7月 壬申)

35) 免稅田捧二十三斗 卽大典定式 而各導掌 或濫捧三十斗 至於各樣免稅 俱有濫捧之患 宮家導掌之弊 邸下想必俯觸 而外方民 以導掌之故 不能料生 免稅田結二十三斗足矣 而猶患其不足 至捧三十斗(承政院日記 英祖 30年 正月 11日 洪鳳漢啓)

36) 萬機要覽 財用篇, 免稅條

37) 上曰 諸宮家及後宮 曾已折受者外 今後則並令勿許折受 將來新宮 則依所啓以職田法行之 而漁餉鹽盆等 各項折受 及代受等事 並爲防禁 各衙門各軍門亦一體施行(增補文獻備考 田賦考 4, 肅宗 14年 條)

38) 增補文獻備考 田賦考 4, 諸田條

土地折受는 근절되지 않았다. 宮房의 경우를 보면 承政院日記 肅宗 21年 2月 14日 條에,
臣聞舊宮 戊辰以後折受者 多者四千餘結 小者亦至千餘結 以此推之 新四宮乙亥以後折受
亦不知幾千結 其視百餘結 多寡之懸殊 爲如何哉 即今諸宮事勢 比之國初 固難難以一例 而
該曹給價之數 可以買取累百結之田 則以此支用 何憂不足 而既給價物 又許折受 使宮家專
其厚利 窮民失其常產 弊無大於此者

라 하여, 肅宗 14年 이후 舊宮의 折受田結이 많은 경우 4餘結 적어도 千餘結에 달하니
이로 미루어 肅宗 21年 이후에 신설된 4개 宮房의 折受는 수 千結에서 百餘結에 이르기까
지 多寡의 격차가 심하다. 戶曹에서 수 百結의 庄土를 구입할 수 있는 代金을 이미 지급
하고 있는데 또 折受를 허락하고 있으니, 그 폐해가 막심하다고 한 것은 折受制력과 후에도
宮房折受가 계속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이렇게 宮房折受가 계속될 뿐 아니라 各
營·衙門의 土地折受도 근절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肅宗 20年 領議政 南九萬은 全羅道監
司의 狀啓에 의거하여, 근래에 諸宮家 各衙門의 折受結이 크게 증가하여 外方의 폐해가
막심하니 各軍門 各衙門의 戊辰 이후 折受處를 모두 혁파 云云하고 있다³⁹⁾.

肅宗 戊辰 以後 宮庄土와 屯土 획득의 主權方法이 折受制에서 買土制로 전환되기는 하
였으나 折受도 완전 근절되지 않고 두 가지 方法이 併行되었다. 英祖 27年 10月 禮曹參判
洪鳳漢이 당시에 新設衙門인 均役廳의 경비조달을 위한 設屯에 즈음하여 給價買土와 閑曠
地의 折受開墾이 最良의 方策이라고 한 것은⁴⁰⁾ 이를 示唆하는 것이다. 어쨌든 戊辰年 以後
各營·衙門 및 各鎮에서 陳荒地 閑曠地 廢棄牧場 加耕地 籍沒田 등을 折受한 事例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몇가지 事例만 欄外에 소개해 둔다⁴¹⁾. 이렇게 折受가 꾸준히 계
속된 최대의 이유는 財政危機가 해를 거듭할수록 擴大深化되어감에 따라 各營·衙門 및
鎮堡 山城 등 諸官府의 運營이 어렵게 되어간데 있다.

肅宗 14年 이후에도 折受의 惡循環이 斷絶되지는 않았으나, 역시 買土制가 支配의 비중
을 차지하였다. 이하 各營·衙門의 買土設屯에 관한 問題를 살펴본다. 景宗 3年(1723

39) 近來 內司·諸宮家·各衙門折受之數 比前尤多 外方不堪其弊 以全羅道監司狀啓 亦可知他道之同然
諸軍門·諸上司 則自戊辰以後折受處 並爲革罷之意 已爲復啓蒙允 知委於諸道矣(備邊司謄錄 肅宗
20年 11月 15日)

40) 禮曹參判 洪鳳漢所啓 均役廳財穀 皆是給代之物 本廳各樣雜用 則不當取用於元數 目下要務 莫如
屯田 或買土 或築筒作畜起墾 以其所收 作爲本廳經用 實爲便好矣(備邊司謄錄 英祖 27年 10月 2
日)

41) (A) 宗簿寺 頃以樂安地加耕田二百餘結折受事 草記蒙允(備邊司謄錄 英祖 8年 11月 30日)
(B) 前略 且本府(金城)境內 有廢堤堰數區 土性甚宜於生穀 地形不合於貯水 積年廢棄 民皆惜之
今亦許民耕食 而作爲山城之屯田 新鎮財力 可以成樣(備邊司謄錄 正祖 2年 12月 24日)

(C) 且糧餉廳 即訓局軍兵軍服 與各樣軍需 又員役等項下 專管責應之所 以若干屯田所收 不能支
用其不足者 每自本曹 專爲相當 經費之耗縮 實爲非細 故自點以後 籍沒田畝劃給糧餉廳 以補其
不足者 亦是前例(備邊司謄錄 英祖 5年 5月 6日)

(D) 本府(江華)各鎮堡 俱在浦邊 士卒既無耕食之地 生理涼薄 勢難安接 目兵曹 雖有逐朔給布之規
亦不足以資活 而在經費 則實有難繼之患 今此堰內田畝 均一劃給於各鎮堡 使其鎮下士卒 亦各
均執 設鎮邊將 看檢勸課 收稅需用 則可除士卒給代之費 可補邊將藥料之資……(備邊司謄錄 肅
宗 33年 11月 16日)

肅宗 33年에 江華府 船頭浦에 築堰하여 周圍 30餘里를 개간하여 管下各鎮堡의 屯田으로 삼
았다.

(E) 全州·臨陂·咸悅·益山四邑之處 有沃野坪 而水道不順 年久陳廢 掘浦則可以蒙利耕食……
其後壬寅年 逆鏡 目守禦廳 聞其地利饒 猝生橫奪之計 啓請折受(備邊司謄錄 英祖 元年 11月 27日)

全州 등 4邑所在 陳廢地의 일부를 民丁을徵發해서 掘浦開墾하여 그가운데 400結을 敦寧府
屯田으로 삼아 徵稅하고 있었는데 이 土地를 景宗 2年에 守禦廳에서 折受함으로써 是非가 벌어
졌다.

11月 獻納 沈埃은 啓에서 買土設屯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挽近以來 軍兵衙門甚多 廣占規利 或給價而買土 設爲屯田者 碁布中外 一依閭里並作之例 收其稅入 此則買取之地 其勢固然⁴²⁾

各軍門에서 혹은 給價買土의 방법으로 설치한 屯田이 中外에 늘려있는데, 모두 民間(民田)並作的 例에 따라 收稅하며, 그 稅收(地代收入)가 다시 買土資金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正祖 12年 右通禮 禹禎圭는 「經濟野言」에서, 오늘날의 屯田은 옛날과 달라 軍門에서 出貨買土가 하거나 혹은 逆家田을 籍屬하여 屯田이라 부르고, 戶曹에서는 이에 公稅를 免除해 주므로 正供이 크게 감축되니 원칙에 어긋난다. 이러한 것은 民間에서 토지를 買賣하는 것과 같고 또 그 徵斂도 私田(民田小作地)과 같다하여 軍門에 의한 買土設屯과 그 經營關係를 밝히고 있다⁴³⁾. 그리고 哲宗 4年(1853) 1月 6日 前威鏡監司 尹定鉉의 狀啓에 의거한 備邊啓에 따르면 이 무렵에 威鏡監營에서는 還上穀으로써 買土設屯하고 있다⁴⁴⁾. 各級官府에서 買土設屯한 事例에 관한 記事가 많으나 생략하고, 各級官府에서 屯田을 신설 또는 확장하기 위한 民田買入이 대체로 17세기 초부터 19세기의 開港期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買土제도 여러가지 피해를 빚어내었다.

첫째로 지적할 것은 國家歲入의 감축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民田은 戶曹와 宣惠廳을 비롯한 財政官司에 租稅=地代를 부담하는 公田이며 또한 民田農民은 結稅外에 身役과 戶役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官房은 물론이고 各級官衙에서 이같은 民田을 買入하여 屯田을 확장하는 것은 財政官司의 歲入減縮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肅宗 43年 10월에 戶曹

〈表-3〉 各營門·各衙門 免稅田畝定限結數(英祖 5年)

營·衙門名	結·負·束	營·衙門名	結·負·束
成均館	400.00.0	司畜署	51.45.7
宗親府	731.29.9	著老所	1500.00.0
忠勳府	1500.00.0	敦寧府	400.00.0
司僕寺	12438.89.0	訓練都監	3000.00.0
司圃署	2000.00.0	管餉屯	754.76.9
掌苑署	121.01.5	禁衛營	67.23.0
內農圃	71.21.0	御營廳	327.48.1
繕工監	130.90.3	守禦廳	1852.88.1
內醫院	4.83.4	摠戎廳	968.39.9
惠民署	3.41.6	經理廳	44.75.6
司葬院	264.00.0	總計	26,666結 2負 6束

資料：備邊司謄錄 英祖 5年 12月 13日 條

42) (A) 備邊司謄錄 景宗 3年 11月 20日.

(B) 增補文獻備考 出賦考 5.

43) 今之屯田 與古有異 自軍門 或出貨 占買良田 或籍屬 逆家之產 而冒稱屯田 則地部從而 不責公賦 故正供多縮 此亦違理之大者 若此類 與民間買賣相似 而其斂也 與私田稅同例(禹禎圭 著 「經濟野言」 田賦摠論 屯田收稅)(鄭昌烈, 前揭論文 參照)

44) 司啓曰 卽見威鏡前監司尹定鉉所報則以爲 南關 有糶多之患 己酉其減糶 就南邑所在給代穀中 劃減萬石 限十年執錢買土 以其屯稅 移作給代 而屯民輩 以稅摠頗高 多不願受 庚戌酌減其稅(備邊司謄錄 哲宗 4年 1月 6日)

의 요청으로 各軍門買得地에도 田稅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昨年因戶曹草記 各軍門買得田畝 一併出稅定奪⁴⁵⁾

그런데 이 규정은 立法 이후의 買得田畝에 限하여 적용키로한 것으로 믿어지나, 遵守되지 않고 死文化된 것으로 믿는다.

그 후 買土·折受의 併行으로 屯土가 歲增年加해가고, 國庫歲入實結이 감축되어 갔기 때문에 英祖 5년에 各營·衙門別로 免稅結數를 定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⁴⁶⁾. <表-3>은 이 때 定限한 各營·衙門別 免稅結數인데 免稅結이 가장 많은 官衙는 1萬2千4百餘結을 가진 司僕寺이고, 各營·衙門의 總免稅結數는 26,666結 2負 6束이다.

그런데 前揭한 <表-3>에 따르면 純祖 7年 현재의 各營·衙門免稅結은 46,104結 97負 9束으로 英祖 5年의 定限結數를 훨씬 上廻하고 있고 또한 그것은 같은 年度의 官房免稅結 37,927結 6負 1束에 비교하여 8千餘結이 더 많다⁴⁶⁾. 약 78年사이에 營·衙門免稅田이 약 2萬結이나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買土 또는 折受의 方法으로 屯田을 확장한 것과 免稅結數의 제한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있다. 이 결과 營·衙門屯田에는 免稅免賦地와 出稅免賦地의 두가지 種目이 있게 되었다. 前者에 대해서는 三手米 結作 砲糧米는 부과하나 田稅와 大同을 면세하는데 대해 出稅免賦地에는 大同만 면세하고 田稅 三手米⁴⁷⁾ 및 結作⁴⁸⁾을 부과하는 土地이다. 그러나 訓練都監屯田 馬位田 및 司僕寺位田에는 三手米가 免除되었다.

買土設屯에 수반한 둘째의 폐해는 民田의 勒買·奪取이다. 民田의 賣買는 契約關係를 원칙으로하나 官房이나 諸官衙는 막강한 恣力에 의거하며 經濟外的 強制를 수반하는 勒買——不當賣買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朝鮮後期에 廣大한 農庄을 가지게 된 各官房은 蓄積한 地代로써 民田을 매입하여 庄土를 확대해갔던 것인데, 官房의 庇護를 받는 導學을 비롯한 外方奸細之輩가 文卷을 위조하는 등 온갖 奸計를 꾸며서 民田을 攘奪하고 이를 官房에 偷賣하는 사례가 非一非再하였다⁴⁹⁾. 欄外에 실은 史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鄉村의 無賴奸細之徒가 官房 또는 官府와 結탁하여 文卷을 위조하거나 訴訟을 제기하는 등 온갖 奸計를 써서 民田을 橫奪·勒賣하여 官房에 偷賣하고 있다. 그러므로 英祖 43年 6月 領議政 金致仁은 各官房 및 衙門의 民田強買의 폐해를 아래와 같이 지탄하고 있다.

前略 而惟明官房 或各衙門田畝勒買事 最爲鄉民次骨之怨 蓋無賴奸細之徒 或以久遠不明

45) 備邊司謄錄 肅宗 44年 10月 6日

46) 純祖 7年 현재 官房田의 총규모는 有土 11,380結 47負와 無土 26,547結 13負 1束으로 合計 37,927結 61負 1束이다.

47) (A) 三手糧米 各樣免稅結 一並收納 而訓局屯田 及驛馬位田勿論 司僕寺位田屬該寺(貢稅要略 免稅式)

(B) 三手米二斗二升……三手米 京畿西北道無 三南減一斗 三南毋論田畝 並捧米 關東海西 旱田則捧小米(續大典 戶典 收稅條)

48) 結作就六道 西·北無 田結時起數 各樣免稅及復戶 一體收捧……海邑收米二斗 山邑捧錢五錢矣……松都·江華並不收(萬機要覽 財用篇 3 結錢條)

49) (A) 與陽人李華 有世傳塚田 出身鄭光羽 稱以買得 盜賣于延切官房 連牟訟辨(備邊司謄錄 英祖 25年 11月 11日)

(B) 近來京外奸細之輩 僞造文卷 盜賣民田之弊比比有之 而難以止事言之 官房之買得 外方田畝者 查問虛實於本道 然後始爲買賣 昭載續大典 則該官不爲查問 只憑一張立官 買得其不當買之田畝者 未免違法(承政院日記 英祖 25年 2月 15日)

(C) 近來遼方 奸細之徒 攘奪平民之田土 符同諸官家所屬 上欺天聽 偷賣牟利 此固莫大之民弊矣 (承政院日記 英祖 22年 2月 15日)

之文記一張 無主立旨 憑藉起訟 理屈見落 則夤緣潛告於宮房或衙門 替當其訟 必捷乃已 或至於世傳無訟之地 亦入於橫奪之中 其爲失業乎冤之狀 當何如哉⁵⁰⁾

啓辭의 要旨은 宮房과 衙門에 의한 田畝勒買의 弊가 鄉民들의 卹에 사무치는 冤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無賴奸細之徒는 혹은 오래된 文記 한 張을 가지고 無主地라는 證明을 받아 訴訟을 제기해 놓고 不利하면 宮房이나 衙門에 潛告하며 소송을 가로막게하여 勝訴하고, 심지어는 代代로 世傳해오는 無訟之地도 橫奪하니 실업하게 되는 農민이 冤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II. 屯田의 經營形態

1. 自耕制經營

經國大典 頒布期로부터 임진란에 이르기까지 屯田의 所有·經營關係의 특징은 抽出해보면, 屯田은 그 所有權은 물론이고 耕作權도 國家 또는 官府에 있는 公田으로서 軍兵 또는 官奴·人吏의 노동으로 경작하는 國家 또는 國家機關의 直營地라는데 있다. 그러나 17世紀 이후 屯田의 生産關係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壬亂後 有土屯田 가운데는 종전과 같은 官衙自耕地(直營地)도 있었으나, 이보다 佃戶經營地(小作地)가 훨씬 높은 比重을 차지하였다.

먼저 官衙自耕制 經營形態에 관하여 살펴보면, 經亂後 官衙自耕地로는 各官의 人吏·奴婢勞動과 各鎮(主鎮·巨鎮·諸鎮)의 軍卒勞動으로 耕作하는 官屯田과 후기에 設置된 軍門屯田의 일부가 있다. 官屯田에 관해서는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後者에 관하여 살펴본다. 後期에 설치한 營門屯田 가운데 軍卒의 勞動으로 自耕한 대표적인 것으로 江界防軍屯田의 經營形態를 살펴본다.

純祖 9年 平安監司가 올린 江界府防軍屯田節目에 따르면, 江界府의 大羅信洞에서 慈城洞에 이르는 海岸要路에 軍田이라고 부르는 屯田을 설치하고 江界府의 防卒 1453名 가운데 身體가 건장한 700名을 選定入防(立役)케 하여 이들에게 京軍門의 例에 따라 每月 5斗씩 月料를 지급하고 屯田耕作과 防禦에 임하게 하였다. 그리고 屯田을 모두 20개 都防(區域)으로 나누어 1都防에 都防將 1名과 次防將 1名씩을 두고, 20名의 都防將 가운데 가장 건실한 者 1名을 뽑아 都監官으로 삼아 屯田의 管理責任을 맡게하고, 또한 20名의 次防將全員을 屯田都監으로 임명하여 屯田耕作을 감독케 하고 全收穫을 軍糧에 補充하였다⁵¹⁾. 그런데 후기에 설치된 屯田 가운데는 이 같은 自耕制方式으로 경영된 直營地는 드물고 대부분이 佃戶制經營方式으로 경작되었다.

2. 佃戶制 經營

1) 無土屯田

佃戶制經營——小作制經營方式에도 여러가지 類型이 있으면, 크게는 有土·無土의 차이

50) 備邊司騰錄 英祖 43年 6月 30日

1) 純祖九年 平安監司 徐榮輔啓 以江界府防軍屯田節目:

東自大羅信洞 至慈城洞終把 而初設屯田 沿江平廣之地 賊路要害之處 許其起壘……本府防卒一千四百五十三名內 限以七百名 募得壯健有根著之卒 一依京軍門例 每期設置六斗料 使之入防 專意巡察 輪回農作 一以備捍禦之策 一以務屯田之地……水上三百里之內 設置都防十所 水下三百里之內 亦置都防十所 一所都防將一人 次防將一人 卒爲八名 而統領三十里內 列把將三人 列把卒十八名 水上水下都防將中 各擇其勤幹者一人 差出水上水上屯田都監官 而水上水下防將 則並差屯田監官 各其信地 俾爲勸農作 備捍禦之地(增補文獻備考 田賦考 5)

가 있고, 有土屯田에 있어서도 打作法(打租法)과 賭地法(賭租法)이 있으며, 또한 屯田의 管理·收稅方法에도 차이점이 있다.

먼저 無土屯田의 經營方式을 살펴본다.

無土屯은 農民 또는 保有地(民田)地主가 경작권을 갖는 民田을 屯田으로 編入시켜 各軍門 또는 各衙門에서 收稅하는 土地이다. 이 無土屯은 各營·衙門이 국가로부터 田稅 大同 등의 收稅權을 讓移받은 土地로서의 民田折受地와 戶役을 비롯한 雜稅를 免除받기 위해 農民이 自己의 耕作地를 屯田으로 假裝하여 入屬시킨 托托民田과 그리고 합법적으로 軍門屯所에 入屬시킨 募入民田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無土屯田은 有土屯田과는 달리 土地保有權(耕作權)이 농민 또는 民田地主에 있기 때문에 營·衙門은 이에 대한 經營·耕作의 主體가 될 수 없고, 公稅(結稅)收稅權만 행사할 뿐이다. 그러므로 조선후기의 이 無土屯田을 그 所有關係에서 볼 때 ① 大典에 收錄된 衙祿田·公須田·長田·副長田 등 官衙에 분급한 各者收稅地와 같고, ② 또한 宮房無土免稅地와 더불어 鮮初科田法下的 科田 功臣田 등의 私田과 같으나 다만 營·衙門이 私人이 아니고 국가의 分身인 公共機關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같은 無土屯田에 대해 各營門에서는 每年 秋收期에 別將 哨官 書吏 官奴 등 該官의 職員을 과전하여 收稅하였고²⁾, 各衙門에서는 書吏 官奴 등 소속職員을 과전하여 收稅하던가 또는 屯土所在郡縣에서 懲稅해서 輸納하였다³⁾.

無土屯田의 稅率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土地는 民田이기 때문에 結稅率이 원칙적으로 국가의 民田(公田)收稅率과 같아 유한다. 壬亂期の 訓練都監屯田에는 稅率을 1 負에 皮穀 6~7 升으로 규정하였고⁴⁾ 그 후 續大典에는 宮房無土免稅地와 같이 每結에 米 23 斗로 限定였다. 1 負當 皮穀 6~7 升 또는 1 結當 米 23 斗는 稅率이 거의 같고 또한 그치는 國家收稅率과도 거의 같은 率이다. 그런데 各營·衙門은 이같은 公定稅率을 준수하지 않고 苛歛虐徵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無土屯의 結稅濫徵의 폐해에 관한 몇가지 記事를 소개해 둔다.

忠清道監司 李德重의 狀啓에 따르면 英祖 中期에 成均館에서는 牙山 稷山所在 無土屯(民結收稅地)에 結當 23 斗의 法定稅率을 무시하고 每結에 100 斗를 징수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擊錚하는 사배가 일어나고⁵⁾, 景宗 11年 1月 侍讀官 尹游의 啓에 따르면 各軍門의 無土屯에 徵稅官으로서 과전된 別將·哨官이 苛歛虐徵하는 民弊를 끼치면서 私囊을 채우고 瘠公肥私를 일삼고 있으며⁶⁾,

各軍門設屯處 皆是收稅於民田者 而或差送別將 或定送哨官 使之執卜收稅 則此輩 專以 苛歛虐徵爲主 民受其弊 利其私囊 其所營納極甚零星 瘠公肥私 莫此於甚⁷⁾

2) 各軍門設屯處 皆是收稅於民田者 而或差送別將 或定送哨官 使之執卜收稅(備邊司謄錄 景宗 3年 1月 25日)

3) (A) 諸宮家各衙門屯田·漁·鹽·船稅與奴婢等貢物 京差收捧有弊……館學(成均館)差人 則依前例 下送 使之越期收納 以補養士之需何如 答曰 允(備邊司謄錄 英祖 13年 11月 12日)

(B) 奎章閣提學朴宗慶所啓 本閣屯土所在邑 勿送屬屬 依無土免稅例 付之本邑納納事 自備局草記 蒙允矣(備邊司謄錄 純祖 11年 3月 12日)

4) 壬辰亂後 新設訓局 軍儲難辦 故募入民田 俾免公賦 屬於屯田 每卜新捧之數 毋過皮穀六七升 比諸公賦而差輕 故民皆樂從矣(增補文獻備考 田賦考 5)

5) 前略 公洪監司李德重所報 則牙山·稷山等地所在成均館位田 流末收稅 依他民結例 二十三斗收捧矣 癸丑年間 自本館 勸謂之 已上田畝 每結收捧百斗租 其時因人民擊錚 自本司 行查本道 則上項田畝 乃是民結免稅(備邊司謄錄 英祖 21年 1月 20日)

上揭記事 가운데 二十四斗收捧은 二十三斗의 誤記이다.

6) 備邊司謄錄 景宗 3年 1月 15日 侍讀官 尹游 啓

그리고 景宗 3年 獻納 沈竣은 各軍門의 民結收稅地인 募入民田에 대한 濫徵의 弊를 다음과같이 밝히고 있다. 즉 募入한 民田은 給價買土한 土地와 달라 公賦인 結稅만 除減하는 것이므로 民田耕作者는 結稅만 軍門에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10餘年 전부터 그 稅를 買得地(有土屯田)와 같이 高率로 徵稅하고 있다. 그리고 各軍門에서는 私人을 派遣하여 屯監이라하고 農民을 심히 괴롭히니 그 피해가 막심하며 이로 말미암아 陳廢되는 토지가 많다. 그러므로 募入民田에 定額의 結稅만 부과하고 屯民의 피해를 제거해야 한다⁷⁾.

2) 有土屯田

ㄱ. 打租法

다음으로 有土屯田의 經營形態를 耕作·管理·收取關係를 中心으로 살펴본다. 有土屯은 荒曠地 또는 無主陳荒地의 折受開墾, 民田의 買得, 沒入屬公地의 折受, 他官府土地의 移屬, 民田의 冒屬·奪取 등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營·衙門에서 耕作權을 갖는 토지라는 점에서 無土屯田과 다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有土屯田의 대부분은 佃戶經營地로서, 屯田을 媒介로하여 營·衙門과 直接生産者를 兩大主軸으로 하는 地主·小作關係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王朝前期에 있어서는 모든 農民은 국가(中央政府)의 佃戶이며, 개별적인 官府에 직속된 佃戶는 아니었다. 前·後期の 이같은 차이점은 後期에 널리 설정된 營·衙門屯田의 經營形態——生産關係가 변화한데 起因하는 것이다.

朝鮮後期の 民田에 있어서 一般的 小作慣行으로는 定額小作制와 定率小作制(分益小作制)의 두가지 形態가 있었는데 前者를 賭地法(賭租·錢法) 後者를 並作法(打作法·打租法)이라 불렀다. 營·衙門의 有土屯에 있어서도 民田(保有地)·官房田 등에서 널리 행해진 小作慣行에 따라 打租制와 賭地制가 채용되었다.

먼저 營·衙門屯土에서 행해진 打作制에 관하여 살펴본다. 定率制인 打作制 가운데 收穫量의 1/2을 收取하는 分半打作制는 朝鮮前期의 世宗期로부터 合法的으로 生成 發達하며 17世紀末(肅宗期)에 이르기까지 民田에서 形成된 支配의 小作形態였다. 鮮初로부터 경작권(保有權)에 의거하며 民田에서 점차로 발달해온 이같은 並作半收制는 英祖 16년에 禮曹判書 李箕穎이,

近來則賭地亦絕 無非並作 並作之規 收穫後爲分其半⁸⁾

이라 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수확량의 1/2을 田主(保有地地主)가 收取하는 分半打作制이다. 그런데 대략 17세기 후기로부터 賭地法이 발달하여 並作制와 併行하였다. 屯土에 있어서도 이같은 民田의 小作慣行을 反映하며 17世紀 前期에는 並作制가 지배적인 小作形態였다.

顯宗 8년에 右相 鄭致和는 各衙門屯土 가운데 개간지 屬公地 등으로 구성되는 有土屯田은 民結收稅地로서의 無土屯田과는 달라 並作半分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是認하고 있으며⁹⁾ 景宗 3년에 沈竣도 各軍門에서 給價買土한 有土屯田에 民田에서 慣行되고 있는 並

7) 挽近以來 軍門衙門甚多 廣占規利 或給價而買土……至於民田募入者 與他自別 本是田主並作之地 而公賦除減之故 只納結卜之稅於軍門者 事理當然 而自十餘年前 加擄其稅 一如買取之地 自軍門委送私人 名曰屯監 任怨脅擄 鞭扑狼藉 毒痛其民貽害多端 仍此而陳廢田疇者多矣 其所收稅大半 花消於屯監之囊囊……請自今以後 各衙門諸處屯田 以民田募入者 一依當初定式 只擄結卜之稅 毋得濫徵 以除屯民一分之弊(備邊司謄錄 景宗 3年 11月 20日)

(增補文獻備考 田賦考 5 屯田)

8) 備邊司謄錄 英祖 16年 閏6月 26日

9) 右相鄭致和曰 所謂屯田 或有開墾空閑處 或有逆家田地屬公處 或有民田之入屬收稅處 而其開墾屬公處 則皆并作半分 豈可與民結收稅同之乎(肅宗改修實錄 卷 18, 8年 10月 申戌)

作的 例에 따라 收稅하고 있는데 이것은 民田買得地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⁰⁾. 그리고 肅宗 33年 6月 戶曹判書 李健命의 啓에 따르면 이 時期에 管餉廳소속의 平安道 永柔郡 德池筒屯田에도 分半收益制를 적용하고 있다.

永柔有德池筒 五六年前 自監營旬管 盡爲開墾 一年所收 殆萬餘石……監營收稅之時 使 監官 擇其中禾穀最好處 落種一斗地 先爲打作 知其所出之數後 毋論土地肥瘠 一從其數分半收稅 屯民呼冤 其勢固然¹¹⁾

德池筒屯田은 5~6年前에 平安監營에서 개간하여 收稅해오다가 管餉廳으로 移給한 것인데, 監營에서 收稅할 때는 屯田監官으로 하여금 벼의 作況이 가장 좋은 1斗落地를 골라서 打作케 한다음 그 收穫量으로써 肥沃度의 차이를 막론하고 屯田 全體의 수확량을 算出하여 分半收稅하기 때문에 屯民의 원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다. 이같은 分半收益制는 小作地의 實收穫量을 分半하는 打租制가 아니고 小作地의 作物이 立稻하고 있는 상태에서 小作料를 결정하는 「執租小作」¹²⁾의 일종인 「坪刈檢見小作」이다. 執租小作의 경우 實質小作料가 수확고의 1/2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조선후기의 屯土에는 有土·無土를 막론하고 「收稅」라는 用語를 쓰고 있는데 收稅의 內容에는 큰 차이가 있다. 無土屯田에 대한 收稅는 營·衙門에서 公田=民田耕作者로부터 원래 國家가 받는 地代=租稅인 田稅·大同·三手米·結作을 포함한 合計 米 23斗를 徵收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有土屯田에 대한 收稅는 營·衙門에서 收穫高의 1/3~1/2에 상당하는 小作料를 徵收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前者는 國家所有地인 公田에 대한 地代=租稅에 해당하는 것이고, 後者에 있어서는 土地耕作權이 諸官衙에 있기 때문에 그 小作料에는 公田地代와 耕作權의 賃貸料가 포함되어 있다. 營·衙門에서 耕作權에 대한 賃貸料를 받게되는 것은 이 時期에 公田=民田에서 形成된 地主·佃戶 사이에 耕作權(下級所有權)에 대한 賃貸料로서의 小作料의 授受가 一般化되고 있었으므로 이같은 民田의 小作慣行을 援用했기 때문이다.

18世紀에 접어들어 民田·宮庄土 및 屯田의 小作形態가 조선의 並作半收制(打作法)에서 踏襲地法 또는 3分打作法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如前히 並作半收制를 踏襲하는 屯田도 있었다. 즉 새로 開墾한 屯田의 경우 초기의 수年 동안은 並作半收制(分半打作法)를 採用하는 것이 일반적 慣例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 地主側(營·衙門)에서 種子를 부담하였다.

新起耕處 自官給種 則依并作例 待秋分半收穫爲白遣¹³⁾

上揭史料는 肅宗 33年(1707年)에 作成한 「江華府船頭浦新墾屯土節目」의 한 條項인데 이밖에 앞에서 본 永柔德池筒屯田에도 並作半收制를 채용하고 있다.

18世紀 이후 일부 屯土에서 채용한 3分打作法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것도 定率小作制의 일종으로서 收穫을 3等分하여 地主 1/3, 耕作者 2/3의 比率로 分配하는 打租法에 속하는 것이다. 備邊司謄錄에는 正祖 22年(1798年)에 黃海道 鳳山 등지의 壯勇營屯土에서 채용하고 있는 3分打租制의 實像을 아래와 같이 傳하고 있다. 비록 屯土의 稅率은 三分取一制로 耕作者에 有利하도록 되어 있으나 地主, 作戶 사이에 介在하는 屯土의 管理收稅

10) 挽近以來 軍兵衙門甚多 廣占規利 或給價而買土 設爲屯田者 甚布中外 一依閭里並作之例 收其稅入 此則買之地 其勢固然(增補文獻備考 田賦考 5 屯田)

11) 備邊司謄錄 肅宗 33年 6月 27日

12) 「執租小作」은 收穫前에 小作地作物이 立稻하고 있는 상태에서 地主와 小作人의 共同立會下에 一定面積의 作物을 베어서 打作한 產出量을 基準으로하여 全耕地의 收穫高를 算出하고 慣習上 또는 約定한 率에 따라 小作料를 確定하는 것이다.

13) 備邊司謄錄 肅宗 33年 11月 19日

人들에 의한 가혹한 看坪과 濫徵으로 말미암아 實質地代率이 1/3을 초과할뿐 아니라 또한 種子 水稅 등의 經營費를 屯民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작자가 失利하는 경우도 있다¹⁴⁾. 이처럼 3分打租制에 있어서도 種子和 水稅를 作人이 부담한다는 것과 또한 高率看坪과 濫徵이 수반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實質地代率은 1/2을 下廻하지 않았던 것으로 믿는다.

奎章閣圖書 가운데 역시 正祖 22년에 作成한 「黃海道 鳳山郡所在 嶺山·沙院·舍人三屯 畚 打作定式節目」이라는 冊子가 있다¹⁵⁾. 이 屯土節目은 당시의 屯土뿐만 아니라 司宮庄土의 小作慣行을 究明하는데 극히 귀중한 史料이므로 다소의 번잡을 무릅쓰고 아래에 그 주요부분을 발췌 요약하는 한편 欄外에 그 原文을 실어둔다¹⁶⁾.

節目的 序頭에서 本營에서는 民情에 따라 「三分之規」를 만들어 屯(官衙)에서 1을 취하고 作人이 2를 취한다. 이제부터 作人들은 不平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규정을 定式한 이후부터 忠進과 같이 경작자가 作奸하는 폐를 일체 금단함으로써 紛雜의 폐를 없앤다. 作人들의 소원이 淸衍郡主房의 三分打作制(東分)이므로 그 예에 따라 各項條目을 만들어 다음에 列擧하니 이를 永久히 준수할 것이다.

(一) 지금 三分打作制(東分)은 民願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나 만약 三屯作民 가운데 혹시 忠進과 같이 三分支定制(三分賭租制)를 원하는 者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民願이므로 그에 따를 것이다. 支定制이거나 打作制이거나 오직 民願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

(一) 三分打作制나 支定制를 막론하고 稅(小作料)를 엄밀하게 부과하고, 稅단을 均一하게 묶어야만 收稅不均의 폐가 없어질 것이다. 下略

(一) 每年秋成後 屯所에서 執卜(課稅)·監打하기 전에 마음대로 베어먹는 者는 屯監의 보고에 따라 本官(郡縣)에서 治罪하며 심한 者는 本官에서 營門에 보고하여 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린다.

(一) 6月早稻를 경작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產出量이 中稻나 晚稻와 같이 많을

14) 朝家設置壯勇營……旣設軍營 又不可不置屯土 故海西鳳山等諸郡 亦做調遣諸營之制 分設屯所 以爲將士支放之需 收稅法 只取三分一 民樂其利 爭趨佃夫作矣 中間任事之人 恣意銜能 始創執卜之法 秋成看坪 勘定卜數 而所捧斗斛 極其濫徵 名雖三分取一 而實則不然 且種子條·水稅條 使民全當民或失利 怨言頗聞(備邊司謄錄 正祖 22年 3月 18日 安岳郡守 李始源 啓)

15) 鄭昌烈교수도 前揭論文中에서 이 史料를 引用하고 있으나, 이 屯土節目은 당시 屯土 뿐만 아니라 官庄土의 小作慣行을 究明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重複을 무릅쓰고 分析키로 한다

16) 『嘉慶三年(正祖 22年) 十月 日 黃海道鳳山郡所在 嶺山·沙院·舍人三屯畚 打作定節目』:

右節目爲遵行事 本營事體與他自別 凡係屯畚打作等事 必詢民情 而曲從之故 迺者三分之規出 而屯取其一 民給其二 寔出於寧失之意 實是他營門 所無之規 從者以後 宜無作民輩 稱寃之端是在果如是定式之後 作民中 自前作奸之弊 必嚴立科條 一切禁斷 然後可無來頭紛雜之舉 而今此作民之所願 一依淸衍郡主旁 東三分例乙仍于 各項事件亦做此例 臚初于左 依此永久遵行者

一、今此東三分打作 旣從民情而爲之 然而三屯作民中 如或有如前 自願三分支定者 則亦此民願也 惟從民願而爲主 則毋論支定與打作 不必膠守常例 亦當依願施行爲齊

一、毋論三分打作與支定 必也詳議執卜 必也均一作束 然後後可無大小低仰之歎 下略

一、每於秋成後 自屯所 未執卜未監打前 任自刈食之類 隨其屯監所報 自本官捉囚嚴治 其中甚者 又自本官 報營門照律嚴懲爲齊

一、所謂六月早稻 間或耕播 而不但所出不如中晚稻 六月又非打作之時 則徒致屯與民之難便 自今以後 六月早稻 一切禁斷是遺 下略

一、今此東三分打作 一依淸衍郡主旁例 從民願爲之 則應行諸條 詳探知委 然後可以舉行乙仍于 該宮舍首招致查問 則所告內 以爲以東三分者 一分打納宮房 二分出給作人 而水稅種子 作人全當是遺 穀草段 每石所納穀草代錢 貳錢定式備納是遺 且每作人 鷄一首式 納于屯監 以爲監打人 點心供饋之資 而斗量時 監考處斗底條 正祖壹斗式 每昨人例給……昨民中 如有頑拒不遵者 自本官隨現懲治爲齊

一、三屯作民中 自願三分支定者 水稅與種子 分叱依前全當 其餘雜費 則勿爲擧論爲齊

뿐 아니라 6月은 打作하는 時期가 아니므로 屯所와 作民이 모두 불편하다. 이제부터 6月早稻는 일체히 금단한다. 下略

(一) 이 三分打作制는 淸衍郡主房의 예에 따라 民願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이니 施行條件을 자세히 探知하여 알린 연후에 비로소 시행할 수 있으므로 該宮舍音을 불러 查問한 결과 所告內容이 다음과 같다.

(ㄱ) 밧단을 3分하여 1分은 宮房에 打納하고, 2分은 作人에 준다.

(ㄴ) 水稅와 種子는 作人이 부담한다.

(ㄷ) 作人은 穀草價로서 每石에 2錢을 備納한다.

(ㄹ) 作人은 밧 한 마리씩을 屯監에 바쳐 監打人의 晝食에 쓰게하고, 斗量時에 監考處에 斗底條로 租 1斗씩을 바친다. 이것은 三分打作應行式例이므로 마땅히 이에 따라 시행할 것이니 作民 가운데 頑拒不遵者가 있으면 本官에서 懲治한다.

(一) 三屯作民中 三分支定을 원하는 者는 水稅와 種子만 종전과 같이 부담하고 그 이외의 잡비는 擧論하지 않는다.

이 三屯畓은 黃海道 鳳山郡內에 있는 某營門屯土이나 앞에서 소개한 安岳郡守 李始源의 啓辭에 나타난 壯勇營屯田과는 다른 것이다. 上揭事目에서 특히 지적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① 正祖 22년부터 이 三屯畓에서 三分打作制를 채용하게 된 이유는 屯民(作人)의 抗租鬪爭이다. 18—19世紀는 民田 宮庄土 屯土의 作人이 高率小作料의 수탈에 반대하여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광범한 抗租運動을 전개한 時期이다¹⁷⁾. 抗租運動의 결과 종전의 分半並作制의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대신 賭租制가 발달해 갔다. 節目 가운데 있는 「作民輩稱寃」, 「紛雜之擧」, 「詢問民情」, 「未執卜 未監打前 任自刈食」, 「早稻播種」 등의 記述로 알 수 있듯이 三屯畓에 실시키로 한 三分打作制도 屯民의 抗租鬪爭과 小作形態變遷의 社會的 추세에 따른 것이다.

② 三屯畓에서 채용한 三分打作制는 束分制이다. 打租小作에는 小作料徵收方法의 가장 原始的인 方法인 打作한 實收穫高를 一定比率로 分배하는 穀分法과 이 穀分法에서 派生한 것으로서 밧단을 一定比率로 나누어 打納하는 束分法 및 곡물이 成熟한 후에 밧두둑을 나누는 畦分法(간혹 蔬菜類에 채용함)이 있는데 三屯畓에서는 이 가운데 束分法을 채용하고 있다.

③ 종전에 三屯畓의 일부에서 三分支定制(三分賭租制)가 실시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당시 일부의 宮房田에서 三分打作制가 실시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三分打作制에 있어 비록 小作料는 1/3이라고 할지라도 各작자가 種子 水稅 穀草價 및 監打人 供饋費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規定대로 分配하더라도 作人의 實質收益은 1/3에 훨씬 未達하게 된다.

⑤ 三屯畓에 있어서 地主·佃戶간에 封建적 支配隸屬關係가 成立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地主인 營門은 官權을 통하여 屯民을 支配하고 있다. 이같은 地主·作人간의 支配—被支配關係는 비단 三屯畓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모든 營·衙門屯土와 宮庄土에서도 형성되고 있었다.

1. 賭地法

定額小作制를 賭租制 또는 賭地法이라 하는데 이것은 定率法인 打作制와는 달리 지난

17) 朝鮮後期 末葉의 抗租運動에 관해서는 金容燮氏의 「韓國近代農業史研究」 p.26~49 參照

수년간의 收穫高를 平均하여 小作料를 定額하는 것이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18~19 세기에 농민들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抗租運動으로 말미암아 民田 宮庄土 屯土에 있어서 賭租制(賭錢制)가 새로운 小作形態로서 널리 실시되었다. 그런데 打租制에서 賭租制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直線적으로 발전해간 것은 아니고, 逆轉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賭租制가 비록 우세하였지만은 打租制도 오랫동안 慣行되었고, 심지어 日帝支配下에서도 채용된 小作形態의 하나였다. 賭租制는 分半打租制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地代率이 약간 낮으나, 凶作時의 收賭(地代徵收) 등 여러가지 問題點이 수반되었고, 특히 產出量에 변동의 幅이 심한 薄土에는 오히려 打租制가 作人에게 有利한 것이었다.

營·衙門屯土 가운데 無土屯田은 耕作權(土地保有權)이 경작자 또는 民田地主에 있는 公田이기 때문에 宮房輪回結(無土免稅地)과 마찬가지로 公田收稅率을 적용하여 收稅額을 每結에 米 23斗로 定限하였다. 그러나 有土屯田은 當該官衙에서 耕作權을 갖는 官有地이기 때문에 같은 公田이라도 地代率이 前者에 비하여 훨씬 높다. 備邊司謄錄 正祖 12年 8日 條에,

有土免稅之一結 二百斗租 既是不易之典

이라한 바와 같이 司宮 및 營·衙門의 有土免稅地의 賭租額은 1負에 皮穀 2斗 1結에 200斗로 定額되었다. 그러나 司宮은 물론이고 各營·衙門은 이 公定賭租率을 지키지 않았다. 英祖 16年에 左議政 金在魯가, 宮家·衙門의 有土屯田의 收租率과 그 賭地並作의 규정 이 郡果마다 다르기 때문에 政府에서도 일일이 다 알 수 없다고한 것은 有土屯田의 地代率에 偏差가 많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宮家衙門 乃是田畝之主 與私田畝無異 且所捧之多少 與賭地並作之規 邑邑不同 非朝家所可盡知¹⁾

그러면 먼저 年代記史料에 斷片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有土屯田의 購租率을 본다. 慶尙道 固城郡所在 守禦廳屯田에는 公定購租率에 따라 田에는 租穀(皮穀) 100斗 畓에는 200斗 稅을 收賭하되 時價基準의 錢納制를 채용하고 있으며,

固城郡所在壯勇營屯土二十五結零 前屬守禦廳時 田則每卜一斗 畓則每卜二斗 以租從時 價作錢上納矣²⁾

忠淸道 平薪鎮壯勇營屯田의 賭租率은 畓 1結에 米 45斗이고³⁾, 水原·洪原 等地에 있는 太僕寺屯田의 경우 設屯초기에는 每結에 100斗와 牧子刷馬價 3~4兩이었는데 뒤에 500斗와 刷馬價 8兩으로 증액 收賭하였다⁴⁾. 이처럼 18~19世紀에 있어서 有土屯田의 結當 賭租(小作料·地代)는 畓의 경우 100斗에서 500斗에 이르기까지 偏差가 심하다.

그러면 현재 保存되고 있는 일부 屯土의 量案에 의거하여 이 시기의 賭租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憲宗 13年(1847)에 作成한 「全州府益山郡所在 總衛營屯畓量案」에는 全州府 助村面에 있는 總衛營屯畓 66筆地를 字號別로 그 位置 形態 結負(斗落) 賭租 作人의 姓名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量案에 의거하여 2·3 等畓의 일부에 대한 結負 및 斗落數와 賭租를 作表한 것이 <表-4>이다. 表와 같은 量案에 의거하여 結負와 斗落과의 관계 그리고 結當 斗落當 賭租를 算出해보면 다음과 같다. 1等地는 1斗落이 4負 8束,

1) 備邊司謄錄 英祖 16年 9月 20日

2) 備邊司謄錄 純祖 2年 5月 23日

3) 平薪鎮即古之牧場 而自甲寅 罷牧設屯 屬之壯勇營……設屯以後 冒耕與折受 並以每結四十五斗爲定 (備邊司謄錄 純祖 2年 3月 8日)

4) 自本寺 遣差人收稅 而屯田一卜之稅 不過一年 牧子刷馬價 亦不過三四兩 而乃至設官以後 逐年增加 則一卜至捧五斗 刷價多至八兩(承政院日記 景宗 2年 5月 12日)

1結이 약 21斗落이 되고, 賭租는 1斗落到 9斗7升, 1結에 203斗가 된다.

〈表一4〉 總衛營屯番等別賭租表(全州府助村面所在) 憲宗 13年(1847)

2 等 番			1 等 番			3 等 番		
結·負·束	斗落	賭 租 石·斗	結·負·束	斗落	賭 租 石·斗	結·負·束	斗落	賭 租 石·斗
0.16.5	4	1.05				0.17.0	5	1.15
0.09.0	2	1.00	0.25.9	6.0	3.00	0.07.5	2	1.00
0.30.8	6	2.14	0.17.7	3.0	1.13	0.17.4	4	1.10
0.09.5	2	1.00	0.07.9	4.0	2.00	0.1206	4	2.00
0.44.4	12	6.00	0.16.6	3.0	1.07	0.04.9	1.7	0.17
0.19.0	4	1.10	0.31.3	5.0	2.10	0.27.8	8	3.12
0.07.5	2	1.00	0.25.4	5.0	2.05	0.21.5	6	2.00
0.32.1	7	3.00	0.13.1	2.0	0.16	0.11.8	3	1.10
0.16.6	4	2.00				0.10.6	3	1.00
0.27.2	6	2.10				0.36.4	10	4.10
0.28.2	8	3.00				0.15.5	4	2.00
0.16.6	3	1.00				0.17.8	7	3.00
0.25.5	6	2.16						
0.14.4	3	1.02						
0.09.1	2	0.18						
0.18.2	4	2.00						
0.14.7	3	1.07						
0.49.4	9	4.00						
0.15.9	3	1.07						
0.16.2	3	1.07						
計 4結26負8束	93斗落	40石16斗	1結38負9束	28斗落	13石11斗	2結00負8束	57斗 7升落	24石14斗

資料, 全州府 益山郡所在 總衛營屯番景案(憲宗 47)

2等地는 1斗落이 4負 4束, 1結은 24斗落이 되며, 賭租는 斗落當 8斗 升5, 結當 206斗가 된다. 3等地는 1斗落이 3負 5束, 1結은 28斗落이 되며, 賭租는 斗落當 8斗 5升 結當 238斗가 된다. 위의 數值들은 概算值이므로 약간의 誤差는 있을 것이나 대충

〈表一5〉 忠淸道連山屯番 4等地賭租表

結·負·束	斗 落	賭 租 石·斗
0.10.1	3	2.00
0.06.3	3	1.10
0.20.6	5	3.00
0.32.4	6	5.00
0.19.5	8	4.00
0.13.2	5	3.00
計 1結 01負 9束	32斗落	18石

資料, 連山屯景案 正祖 21年(1797)

〈表一6〉 忠清道連山屯畝面別賭租表(正祖 21年(1797))

所在面	筆地數	總結負 (結·負·束)	總斗落 (租·斗)	賭租 (石·斗)	結當平均賭租 (斗)	斗落當 平均賭租
縣內面	24	3.09.9	4.17	68.10	442	14斗 1升
白石面	83	10.09.0	12.06	146.05	289	11斗 7升
外城面	23	2.90.8	4.10	46.00	316	12斗 2升
赤寺谷面	72	9.02.1	11.14.5升落	145.05	320	12斗 3升
合計	202	25結21束8負	33石10斗 5升落	406石	322斗	12斗 1升

資料, 連山屯量案

實數와 一致될 것으로 믿는다.

〈表一5〉는 忠清道 連山縣筭千庫屯土의 量案 가운데 4等畝만 골라서 結負 斗落 및 賭租 關係를 作表한 것이다. 表의 結負 斗落 및 賭租關係를 분석하면, 4等田 1斗落은 3負 2束, 1結은 31斗 5落升落, 斗落當 賭租는 11斗, 結當賭租는 346斗이다. 〈表一4〉의 總衙營屯畝 및 〈表一5〉의 連山屯畝의 量案分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1·2·3·4 等地의 結當 斗落數는 각각 21·24·28·31斗落 5升落이 된다. 田等(肥沃度)이 낮아짐에 따라 3~4斗落씩 遞增하고 있음으로 5等地 1結은 약 35斗落 6等地는 약 38斗落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三南地方에 있어서 1結의 斗落數는 대충 21斗落→38斗落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斗落은 落種하는 種子의 量(斗數)에 따라 定해지는 것이므로 肥沃度가 낮은 토지일수록 結의 面積이 넓어지기 때문에 斗落數가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薄土가 많은 平安·咸鏡道

〈表一7〉 華城府 長興屯畝賭租表

斗落	賭租 石·斗	斗落	賭租 石·斗
3	3.05	6	4.00
4	4.05	10	8.00
5	5.00	10	10.00
5	4.00	3	3.00
6	7.00	10	7.00
3	2.00	6	5.00
6	7.00	8	7.00
6	7.00	9	7.00
2	2.00	5	3.00
5	4.10	3	3.00
3	3.00	4	4.00
6	7.10	6	6.18
4	4.00	7	8.00
3	3.00	5	4.00
7	8.00	以下省略 總計 833斗 7升落 賭租 797石 4斗 斗落當平均賭租 19斗 1升 2合	
5	4.00		
總計	833斗 7升落, 賭租 797石 4斗, 斗落當平均賭租 19斗 1升 2合		

資料, 華城府買得長興所在屯畝賭租捧上冊(正祖 12年)

에는 1結이 80斗落 심지어 100斗落到 달하는 土地도 있다.

〈表一6〉은 連山屯畝의 賭租를 作表한 것이다. 連山縣內 4개面に 集中되어 있는 202筆地에 달하는 屯畝 가운데 田等別 筆地數는 1等地 12, 2等地 34, 3等地 137, 4等地 19筆地로 되어 있다. 이같은 田等構造에 있어서 약 70%가 3等地에 속하므로 全屯土의 平均田等을 3等地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이 屯畝의 結當賭租는 最低가 白石面의 289斗이고 最高가 縣內面의 442斗이며, 全屯畝의 結當平均賭租는 322斗이다. 그리고 斗落當 賭租는 白石面이 11斗 7升으로 가장 적고, 縣內面이 14斗 1升으로 가장 많으며 全屯畝의 斗落當 平均賭租는 12斗 1升이다.

〈表一7〉은 「長興屯畝賭租捧上冊(正祖 12年)」에 의거하여 作成한 것인데 斗落과 賭租만 記載되어 있을뿐 結負 田等 및 기타가 기재되지 않고 있다. 추측컨대 賭租率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等畝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斗落當 平均賭租는 19斗 1升 2合으로 禁衛營全州屯畝와 連山屯畝보다 훨씬 많다.

「內需司黃海道庄土文續」에는 黃海道 載寧·信川兩郡所在 宜禧宮庄土의 斗落當 產出量을 밝히고 있는데⁶⁾, 田等과 作況에 따라 最低 10斗에서 最高 35斗에 이르기까지 심한 偏差를 나타내고 있다. 이 記事에서 土地等級別 산출량을 대충 推定할 때 1等地的 斗落當 산출량은 30斗, 2等地는 25斗, 3-4等地는 25~20斗, 5-6等等地는 15~10斗이다. 이같은 斗落當 산출량으로써 위에서 살핀 全州·連山·長興屯畝의 賭租率(小作料率)을 算出해 본다. 먼저 위의 斗落當 產出量으로써 田等別 結當產出量을 推定해 보면, 1等地=610斗, 2等地=600斗, 3等地=560斗, 4等地=468斗이다. 이들 數値는 後期の 다른 여러 史料에 나타난 結當產出量과 거의 一致된다.

그런데 위에서 推定한 斗落當·結當산출량으로써 各屯土의 賭租率 즉 地代率을 算出하면 禁衛營全州屯畝의 賭租率은 1等畝가 33%, 2等畝가 34%, 3等畝가 42%로 平均率이 36%이고, 連山屯土는 이들 3等畝으로 간주할 때 賭租率은 57%가 되며, 華城長興屯土는 賭租率이 76%로 매우 높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年代記史書와 量案의 資料에 의거·분석한 各屯土의 賭租率에는 심한 偏差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注目되는 것은 50%를 上廻하는 屯土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並作制로 불리는 分半打作制에서 定額小作制인 賭地法으로 전환하게 된 要因은 農民들의 抗租運動으로 말미암아 折半並作制의 운영이 어려워진 데 있다. 分半打作者에 있어서 농민들의 抗租形態에는 ㉠ 刈稻時 作束不均, ㉡ 打作時 租束隱匿 및 不精打租, ㉢ 沃畝早稻耕作 및 기타 여러가지가 있었다⁶⁾.

打作制의 難點을 打開하기 위하여 賭地法이 채용되었으나 그 小作料는 如前히 高率이었다⁷⁾. 賭地法에 있어서 地代率이 1/3 내지 1/4이라고 하나, 田稅를 作人이 부담하는 民田은 물론이고⁸⁾ 屯田에 있어서도 三手糧과 結作이 부과되었고 또 免賦出稅地에는 田稅도 부

5) 載寧地 土品最上 故逢豐則每斗落只 可出三十五斗 雖平年 可出三十斗.

載寧地 信川地 此兩處 土品爲其次 豐年則每斗落只 可出三十斗 雖平年 可出二十五斗.

信川地 載寧地 此兩處 土品爲中 豐年則每斗落只 可出二十斗 雖平年 可出十五斗.

載寧地 信川地 土品其中最下 豐年則每斗落只 所出不過十五斗 平年則所出僅爲十斗.

(內需司黃海道庄土文續·金容燮著, 朝鮮後期農業史研究 p.377)

6) (A) 黃海道鳳山郡所在 嶺山·沙院·舍人三屯畝打作定式節目

(B) 金容燮著, 朝鮮後期農業史研究 p.385~6 參照

7) 金容燮著 上揭書 p. 386.

8) 今年田稅 既已蕩減矣 田主之並作者 則所減之稅 田主當自食之 而賭地減捧者 則作者例爲備納田稅 今年幸蒙減稅之澤 作者當食其稅條(備邊司謄錄 英祖 16年 9月 20日)

과되었다⁹⁾. 그러므로 賭租制에 있어서 屯田에 부과되는 公賦(結稅)인 二手糧 結作 田稅(免賦出稅地)는 作人의 부담이었고, 그밖에 種子 水稅 穀草價 기타 잡비도 作人이 부담하기 때문에 비록 賭租率이 1/3이라고 하더라도 實質負擔率은 1/2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賭地制에 있어서 地代形態는 生産物(租·太)과 貨幣(帝平通寶)로 大別된다. 17세기에 접어들어 農業과 手工業部門에서 生産이 점차로 발전되고 또 大同法이 실시됨에 따라 農奴의 生産機構의 內部에서 小商品生産이 진전되어 鄕市와 市廛을 據點으로 하여 交換經濟가 발전해감에 따라 貨幣流通이 활발해져 갔다. 이러한 貨幣經濟의 進展을 기반으로 하여 일부 地域에서 田稅의 錢納化가 실현되었다. 부연하면 肅宗 39年(1713)에 黃海道 新溪 등 山郡 5 邑에 田稅作錢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安東 등 嶺南嶺底 7 邑, 禮安 奉化 등 竹嶺 3 邑, 永春 등 湖西 3 邑, 伊川 등 關東嶺西 6 邑, 黃海道 黃州 등 長山以北 11 邑의 田稅가 錢納制로 전환하였다. 이같은 錢納化의 진전과정에서 혹은 作人의 要求에 따라 혹은 官衙의 財政運營의 필요에서 英·正祖期로부터 屯土에서도 地代錢納化가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英祖 初期에 司囊院禮泉屯田에는 每年 450兩의 賭錢을 徵收하고 있으며¹⁰⁾, 正祖期에 司圃署栗島屯田 및 典性署汝矣島屯田의 地代를 賭錢制로 徵收하고 있다¹¹⁾. 그리고 正祖期에 全羅道古阜 御營廳屯田 295結에 300兩의 賭錢을 징수하고 있으며¹²⁾, 역시 같은 시기에 黃海道 鳳山郡所在 軍器寺屯田에서는 1,000兩의 賭錢을 받고 있다¹³⁾.

民田 및 宮庄土와 마찬가지로 18세기 이후 屯田에 있어서도 定額貨幣地代 즉 賭錢制가 널리 발달해 갔다. 中世後期 近世初期에 英·佛을 위시한 西洋各國에 있어서 貨幣地代의 발전은 農民의 人格束縛을 緩和할 뿐 아니라 貨幣價値의 繼起的 低落을 통하여 自營獨立農民層을 創出하는데 寄與하였다. 그러나 朝鮮後期에 성립된 貨幣地代는 그와 같은 推進的 役割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公田에 있어서 國家地代(結稅)의 壓倒的 部分이 米·布中心의 生産物地代로 존속하였고, ② 民田小作地 宮庄土 屯土의 일부에 채용된 賭錢制에는 永賭錢制 즉 長期定額貨幣地代가 드물었고, ③ 經濟外的 強制的 존속으로 田主 또는 管理者 衙前들에 의한 地代濫徵이 심했고, ④ 17세기 후기부터 開港에 이르는 기간에 常平通寶의 實質價値가 비교적 安定을 유지해 왔다. 물론 이 기간에 貨幣價値가 低落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16~17세기에 西洋各國에서 경험한 바와 같은 貨幣價値의 격심한 低落現象은 일어나지 않았다. 英祖期로부터 開港에 이르는 100餘年 동안 貨幣價値의 低落率은 1/2에 미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定額小作制에 있어서도 賭租制나 賭錢制를 막론하고 地代率은 打作制에 비교하여 크게 輕減되지 않았고 民田 宮庄土 屯土의 佃戶經營地에 대한 地代誅求는 여전히 苛酷하였다. 民田地主 宮房 및 各營·衙門에서 定額小作制를 채용하게 된 動機는 地代率을 輕減하려는

9) 驛位田 訓局屯田 및 京畿道를 除外한 모든 土地에 結當 1斗 2升의 三手糧이 부과되었고 또 宮房田과 營·衙門屯土를 포함한 免賦出稅地에도 1結에 2斗의 結作이 부과되었다. 三千糧 各樣 免稅結一並收納 而訓局屯田 及驛馬位田勿論.

各官房各衙門 及外邑各樣雜位免稅結中 並收三千 而各驛馬位 及訓局屯田勿論 司僕位田 屬該寺(貢稅要略)

10) 司囊院折受禮泉屯田處 所收稅穀 曾前自本院定送差 以錢文四百五十兩 每年收捧矣(備邊司謄錄 英祖 4年 2月 29日)

11) 司圃署所報以爲 本署栗島所在位田 今年稅錢 尙無捧上之事 而今此民情如此 稅錢從實減給云 典性署所報以爲 汝矣島田土收稅 己亥年 以錢六十一兩零 從民願永爲定式矣(備邊司謄錄 正祖 13年 12月 21日)

12) 前略 御營廳 無論豐歉 以代錢三百兩定式上納……略(備邊司謄錄 正祖 22年 3月 27日)

13) 武庫鳳山郡教弊節目 壬寅 12月 日(鄭昌烈 前揭論文)

데 있는 것이 아니고 農民들의 집요한 抗租運動으로 打作制의 운연이 어려워진 데 있다. 그러므로 定額小作制에 있어서도 田主는 地代收入의 極大化를 追求하였고 導掌 등 屯土管理 人層은 地代濫徵을 감행하였다.

定額小作制인 賭地法에 있어서 특히 災結免稅와 導掌差人輩에 의한 規外濫徵은 심각한 社會問題로 등장하였다. 먼저 災結免稅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國家地代인 結稅徵收에 있어서는 給災라하여 災結免稅규정이 있었으나, 民田小作地 宮房田 屯土의 佃戶經營地에는 災結免稅규정이 없고, 대체로 小作慣行에 맡겨지고 있었다. 治水灌溉施設이 빈약하고 耕作技術水準이 低位에 머물던 당시의 農民生產은 自然條件에의 依存度가 높았던만큼 災害率도 높았다. 이 결과 收穫이 平年作의 水準에 훨씬 미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全無한 경우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公田收稅에는 給災規定이 있었으나, 이러한 制度의 裝置가 없고 小作慣行에만 의거한 宮庄土¹⁴⁾나 屯田에 있어서는 災結給災를 허용하지 않고 災結에 定額의 賭租·錢(小作料)을 強徵하는 사례가 非一非再하여 社會的 物議를 자아내었다. 그러면 屯田의 災結收賭에 관한 몇가지 事例를 들어 본다. 純祖期에 糧餉廳 全州·礪山屯田 및 沃溝所在 耆老所屯田과 宮庄土에는 陳廢地에 收賭하고 있으므로 3개 郡縣에서는 時起田을 打量하여 從實定稅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¹⁵⁾ 憲宗 5年 4月 特進 宮 李憲球에 啓에 따르면 各宮房·各司·各營屯土에 每年 秋成期에 導掌輩가 下來하여 屯民을 威脅하면서 陳廢與否를 막론하고 모두 收都하며, 作錢收納時에는 石當時價가 5—6兩이라고 할 때 7—8兩을 強徵하고 있는 실정을 밝히면서 導掌差送을 금단하고 屯土所在 宮에서 徵稅輸納토록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各宮房·各司·各營屯土之在於列邑者 每年秋成時 各該導掌輩 依例下來 執稅時 無論陳廢與否 一并執稅 災實之間 不有民論 威喝推剝……而本色徵捧之外 如或作錢 則每石時價 假令爲四五兩 則勒定七八兩 督迫收捧 逐年爲常¹⁶⁾

正祖 초기에 各道暗行御史들의 狀啓에 따르면 忠淸道 丹陽 등 3邑 所在 糧糧廳 및 耆老所屯田과 黃海道 全川所在 訓局屯田에는 陳廢·豊凶을 가리지 않고 定額小作料를 徵收하고 있으며¹⁷⁾ 正祖 10年代에 典性署汝矣島屯田에는 賭錢 61兩을 定額해놓고 凶年에도 財政逼迫을 빚자하여 減免하지 않고 있다¹⁸⁾.

위와 같은 陳結 災結에 대한 白地收賭(收稅)의 폐해가 痼疾化되었기 때문에 18~19세기에 各道監司들의 災實分等狀啓에는 年例行事처럼 宮庄土와 屯田의 給災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몇가지 事例만 소개해 둔다.

(A) 各軍門屯稅 及各衙門·各宮房 有土免稅 一依民田例 從實收稅 毋得濫徵捧之意 捧甘嚴飭¹⁹⁾

14) 前略 永作宮屯 雖值極凶 亦不給災 每年白徵 不能料生 若當災年 則該邑守令 與宮差眼同踏驗 一從時起 實捧收稅事爲請矣(備邊司謄錄 英祖 21年 6月 1日)

15) 全州·礪山糧餉廳屯土 沃溝之兩宮房 及耆老所田畓 皆以地有陳廢 稅有定額 京納必責高摠 民稅倍徵 三邑所陳 皆以打量時起 從實定稅爲請矣(備邊司謄錄 純祖 11年 3月 19日)

16) 備邊司謄錄 憲宗 5年 4月 25日

17) (A) 糧餉廳·耆老所屯田……勿論豊凶 作爲一定之稅 使各其邑 定式上納矣(備邊司謄錄 正祖 3年 3月 29日)

(B) 前略 換設訓局屯田之後 不顧陳起之虛實 年穀之豊歉 一番執起 有無加減 下略(備邊司謄錄 正祖 11年 4月 17日)

18) 典性署所報以爲 汝矣島田土收稅 己亥年 以錢六十兩零 從民願永爲定式 下略(備邊司謄錄 正祖 13年 12月 21日)

19) 備邊司謄錄 正祖 8年 9月 28日 原春監司 徐鼎修 災實分等狀啓

20) 備邊司謄錄 純祖 11年 10月 9日 江原監司 李好敏 災實分等狀啓

(B) 各軍門屯稅 及各官房·各衙門有土免稅 並依公田例 災減收稅事也²⁰⁾

(C) 各軍門屯稅 及衙門有土免稅 從時起收稅之意 捧甘嚴飭事也²¹⁾

모두 各軍門 各衙門 및 各官房의 有土免稅地인 佃戶耕作地에 公田=民田의 例에 따라 從實收稅 災減收稅 時起收稅하여, 陳結 災結에 免·減稅토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各道監司들의 이같은 呼訴는 대체로 英祖期로부터 甲午改革에 이르기까지 年中行事처럼 反復되고 있다. 李朝政府에서도 누차에 걸쳐 宮庄土와 屯田의 災結收稅와 濫徵을 엄단하는 措置를 취한 바 있으나²²⁾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다.

流來陳結이나 當年災結에 定額의 小作料(賭租·錢)를 強徵할 때 屯民들은 再生産이 不可能할 뿐 아니라 目前의 生計에 危脅을 받게된다. 그러므로 18—19세기의 賭地制下에 屯民의 抗租鬭爭은 주로 災結免稅 문제가 契機가 되어 발생하였고²³⁾ 抗租鬭爭은 주로 地代의 衍納·拒納의 형태로 나타났다.

屯民抗租에 관한 事例를 들면, 正祖 7년에 忠淸道 一帶에 있는 忠勳府屯田의 作人들이 小作料를 바치지 않을 뿐 아니라 差人을 쫓아내고 있으며,

湖西一道 弊端愈甚 應納地稅 不惟不納 毆逐差人²⁴⁾

哲宗期の 宗親府曆錄에는 固城·揚川·江陵地方의 宗親府屯土 作人들의 屯稅衍納(滯納)이 習性化되어 있고 또한 白地徵稅를 빙자하여 拒納하고 있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²⁵⁾. 純祖 31년에 義州屯民 數百戶는 小作料引下를 요구하면서 集團抗租鬭爭을 버렸다²⁶⁾.

封建支配層에 의한 農民侵漁가 그 絕頂에 도달한 哲宗期에 접어들면서 屯民의 抗租運動은 宮庄土와 民田農民의 抗租運動과 並行하여 高潮되어 갔으며, 드디어 哲宗 13年(1862年)의 壬戌農民亂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III. 屯田의 管理

朝鮮前期에 公田(民田)의 內部에서 土地保有權 즉 耕作權의 集積을 통하여 保有地에 있어서 地主小作關係가 形成되었으나 保有地地主(民田地主)의 主體를 이룩한 兩班官僚들은 거개가 그들의 奴婢로 하여금 農莊의 管理·收租의 任務를 담당케 하였다. 그런데 壬辰亂 이후 設定된 宮庄土와 各級屯土에 있어서도 前期이래의 民田에서 보는 바와 같은 並作關係가 형성되고 있음은 已述한바와 같다. 이 시기에 民田小作地는 소규모의 것은 田主(保有權者)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의 것은 그 管理를 奴婢 또는 傭音을 비롯한 管理人에게 위임하였다.

朝鮮後期에 經營形態와 生産關係에 있어 各級屯土와 類似點이 많은 宮庄土의 管理 收稅관계를 먼저 일별해본다. 宮庄土는 대개 그 管理를 導掌 宮差 監官 등에 맡겼다. 監官과 傭音은 屯土所在地에서 庄土의 經營 관리에 관한 제반실무를 담당하나, 宮差와 導掌은

21) 備邊司曆錄 高宗 25年 11月 10日 江原監司 鄭泰好 災實分等狀啓

22) 諸道災實 始未定其何如 而大抵湖南·湖西 俱已判歎 嶺南·海西不免失稔 凡被災之處 雖莫重王稅 亦爲從實蠲減……各官房各衙門屯稅 每多勒徵濫捧之弊 最爲飢民難支之患 不可不及今嚴飭 分付各該道臣 使之嚴飭列邑 必令從實執稅 無或有把束加徵之弊 若復憑藉橫濫侵及不毛之地 則各該差人 自本道嚴加勸治 俾絕災年厲民之端何如上日 依爲之(備邊司曆錄 純祖 9年 8月 25日)

23) 金容燮著, 韓國近代農業史研究 p.44 參照

24) 日省錄 正祖 7年 2月 漸至. 忠勳府 啓(鄭昌烈 前揭論文)

25) (A) 換近以來 外邑民習 漸至擲項 收稅之際 每尙尙納(宗親府曆錄 2册 庚戌 7月 日. 金容燮著, 前揭書 p.46)

(B) 屯民蒙稱以白地徵稅 百計圖頑 每尙尙納(宗親府曆錄 3册 咸豐甲寅 8月 日. 金容燮著, 前揭書 p.47)

26) 平安監營啓錄 辛仰 12月 16日 鄭昌烈 前揭論文

주로 小作料의 徵收·上納業務를 담당하면서 한편으로는 現地の 監官 舍音을 통솔하며 農業經營全般을 관리한다. 그리고 宮房直營地에는 宮差를 두고 委託地에는 導掌을 두었다¹⁾. 이들 庄土管理人的 身分은 舍音은 庄民 중에서 택하고, 監官은 거개가 庄民이 아닌 前職官僚出身의 地方民이고 宮差는 宮奴 또는 司宮의 職員이며 導掌은 宮屬이 아닌 일종의 租稅請負人으로서 그 가운데는 平民 뿐만 아니라 賤民 또는 兩班身分도 있었다²⁾. 和田一郎은 導掌을 一般導掌投과 投托導掌으로 區分하고³⁾ 있으나, 河合弘民은 役價導掌 納價導掌 投托導掌의 4 종류로 區分하고⁴⁾ 있는데 和田씨의 區分이 사실과 符合되는 것이다.

屯土를 그 管理·收稅方式에 따라 分類하면,

A型: 屯土所在官에서 管理 收稅하는 屯土

B型: 營·衙門에서 任命하는 管理人에 의하여 管理 收稅되는 屯土로 區分할 수 있다.

먼저 A型屯土에 관하여 살펴 본다. 壬辰亂 후 宮庄土와 屯田이 設定되는 초기에 있어서는 宮房 또는 各級官衙에서 導掌 屯監 등을 任命하여 管理 收稅하였으나 그들에 의한 苛斂虐徵의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正祖 元년에 宮房無土免稅地는 所在官(郡縣)에서 收稅上納토록하고 導掌差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하여 그 후 正祖 8년에 頒布된 大典通編 戶典에, 宮房無土免稅地에는 導掌差送制를 혁파하고 所在地 郡縣에서 1結에 米 納일 경우에는 23斗, 錢納일 경우에는 7兩六錢 7分씩을 徵收하여 戶曹에 直納하면 거기서 該宮房에 지급한다는 條項을 設定하게 되었다⁵⁾. 宮庄土에는 이같은 규정이 대체로 지켜졌으나 營·衙門의 無土免稅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 痕跡을 찾아볼 수 없다.

各衙門屯土에 있어서도 屯監 屯將의 作弊가 극심했기 때문에 肅宗期로부터 屯監 등에 의한 管理 收稅制를 혁파하고 所在地의 郡縣에서 管理 收稅케 하자는 논의가 활발이 일어났다. 즉 肅宗 5年 10月 特進官 尹某는 啓에서 屯民을 收奪하여 私囊을 채우는 屯將의 作弊를 지탄한 다음, 屯將 導掌들을 모두 혁파하고 守令이 徵稅輸納토록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肅宗은 이를 議政府에서 논의하라 하였다⁶⁾. 그 후 肅宗 14年 12月 5日 筵中에서 校理 俞得一을 위시하여 여러 官僚들이 屯監差送制를 혁파하고 屯土의 管理·收稅를 本官에 맡길 것을 力設한 결과 肅宗이 이에 同意하여 各衙門屯監을 모두 혁파하고 本官에서 主管하라 하였다.

俞得一曰……屯監之作弊 雖甚無狀 自本官下敢下手禁斷 而使各邑旬管 則雖不能親自檢察 監官如有不能 則守令自當糾正罪責 似不至於專事剝削 貽害民間 設令各司歲入之數 視前無

1) 金容燮著, 前揭書 p.307~8.

2) 同上 p.297~324 上參

3) 和田一郎은 一般導掌은 有土免稅地 및 正祖 元年前에 宮房에서 직접 收稅하던 時期에 無土免稅地에 設置한 것이고, 投托導掌은 投托地設置한 것이라 한다. (和田一郎 著, 土地制度度及地稅制度 調査報告書 p.136~7)

4) (A) 役價導掌이란 宮房소속의 荒地의 개간을 請負하여 自己資金으로써 農地를 造成하고 宮房으로부터 該農地의 導掌으로 任命되는 것이나 投資한 資金은 導掌이 된 후에 每年 屯民으로부터 回收한다.

(B) 納價導掌은 宮房에 一定金額을 納付하고 導掌의 權利를 買得하는 것이며

(C) 作導掌은 役價·納價·投托導掌 이외의 것으로서 宮房에 대하여 功勞가 있는 者를 導掌으로 任命하는 것이라고 한다.

5) 各宮房無土免稅地 導掌差送之規 並革罷 每結米則二十三斗 錢則七兩六錢七分 自該邑直納本曹 出給宮房(大典通編 戶典)

6) 各衙門·各官屯田一事 最爲國之大害……爲屯將者 剝民肥己 交通貨賄 締結胥吏 其弊有不可勝言者……臣以爲各衙門諸屯屯將 諸宮家折受導掌等 一切罷之 以其土地人民 歸之守令 計各衙門所入 使其守令 收其所出 歸之軍門若宮家……上曰 當令廟堂商議變通焉(備邊司謄錄 肅宗 5年 10月 22日

增 其在損上益下之道 恐不悖矣 此係大段民弊 不可不盡罷屯監之任 令本官主管 永爲定式 施行矣 上曰 各衙門屯監 併爲革罷 令本主管可也⁷⁾

여기서 말하는 監官이란 守衛이 任命하게 되는 屯土管理人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注目되는 것은 屯監이 비록 극심한 作弊行爲를 감행하더라도 各官守衛이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屯監 導掌들이 營·衙門 또는 官房으로부터 막강한 權力의 庇護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屯田의 本官 管理收稅制가 제대로 實行되지 않고 差送制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 문제가 자주 논의되었다. 景宗 3年 1月에 侍讀官 尹游는 各軍門에서 심지어 民田收稅地인 無土屯田에까지 別將 哨官 등을 差送하여 收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의 苛斂虐徵과 瘠公肥私하는 폐해를 除去하기 위하여 收稅人의 差送을 일체 금당하고 本官에서 收稅直納토록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⁸⁾. 요컨대 屯田의 本官 收稅制는 극히 일부의 屯田에서만 실시되었을 뿐이다. 그러면 이하 本官에서 管理收稅한 A型屯田에 관한 몇 가지 事例를 소개해 둔다.

丹陽 堤川所在 糧餉廳 耆老所屯田에는 英祖 40년에 導掌差送制를 폐지하고 年事의 豊凶을 막론하고 平年作의 產出量을 기준으로하여 결정된 定額小作料(賭租)를 本官에서 徵稅輸納토록 하였다.

糧餉廳·耆老所 曾於甲申年間 革罷導掌分送之規 以中年摠 勿論豊凶 作爲一定之稅 使各其邑 定式上納矣⁹⁾

司囊院 禮泉屯田에는 該院에서 差人을 派送하여 每年 450兩씩의 賭錢 즉 定額貨幣地代를 징수하고 있었는데 英祖 3年으로부터 本官에서 收稅上納하기로 결정하였다¹⁰⁾.

이처럼 일부의 屯田과 官房無土免稅地만이 本官에서 管理收稅될 뿐 여타屯田과 官房有土免稅田은 모두 當該官衙와 司官에서 管理收稅되었다. 그런데 年事가 극히 凶作일 경우 緊急對策의 하나로서 屯田과 宮庄土의 差人收稅를 일체 금당하고 本官에서 收稅上納케 하는 조치를 취한 事例가 간혹 있었다. 즉 備邊司謄錄에는 災害가 우심한 地域에 司官·營衙門의 差人收稅를 금지한 아래와 같은 記事가 보인다.

(A) 三南諸邑 分等狀啓 姑未上來 而沿海年事之尤爲凶歉 槩可知矣 自前諸官房·各衙門屯田及鹽船稅 若送差人收來 則多有貽弊之端 故辛·壬年間 因大臣所達 不爲下送 自本邑依數收捧 直爲上納矣 今亦依此例 三南沿海諸邑 諸官房各衙門差人 勿令下送 自本官收稅上納 實爲除弊之一道矣 右議政宋曰 辛·壬年間 判府事徐以此陳達 而自上有三南尤甚邑 勿送差人之命矣 上曰 今亦依此例爲之可也¹¹⁾

(B) 被災四道目下民情 已切悶急……而遠民切骨之弊 專在屯稅 京差四出 侵徵百端 遇歉之民 尤何以支保乎 四道所在各官房·各司·各營屯土收稅 今年則并令勿送京差 自本道惟從農形實狀 一一均執 如期上送 如是而若或有稱以京差 冒禁橫侵之弊 則道臣隨即查

7) 備邊司謄錄 肅宗 14年 12月 5日

8) 各軍門設屯處 皆是收稅於民田者 而或差送別將 或定送哨官 使之執卜收稅 則此輩專以苛斂虐徵爲主 民受其弊 利歸私橐 其所營納極其零星 瘠公肥私莫此爲甚 此雖非今斯今 而亦不可無一番矯革之道矣 ……自今勿爲差送別將·哨官之類 使其屯田所在官 隨其年事之豊歉 從實徵稅 直納該營(備邊司謄錄 景宗 3年 1月 15日 侍讀官 尹游 啓)

9) 備邊司謄錄 正祖 3年 3月 28日

10) 司囊院折受禮泉屯田處 所收稅穀 曾前則自本院定送 以錢文四百五十兩 每年收捧矣 昨年因本郡報狀 監司狀聞 自本院勿送差人 自本郡依定式收稅上納定奉(備邊司謄錄 英祖 4年 2月 28日)

11) 備邊司謄錄 英祖 13年 9月 28日

發直爲刑配之意 先期嚴飭何如上曰 依爲之¹²⁾

記事 (A)는 英祖 13년에 심한 災害를 입은 三南沿海各郡에 散在한 宮庄土 屯田 및 漁場에 대한 差人收稅를 금하고 本官에서 收稅上納케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記事에는 英祖 7—8년에 被災各郡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記事에 따르면 純祖 14년에 災害가 우심한 4道에 各宮房 및 各營·衙門의 京差收稅를 금하고 各道에서 從實收稅하여 上納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凶作時에 屯稅의 差人收稅를 금한 이유는 自然災害에 屯監·導掌 등 屯田의 管理收稅人에 의한 가혹한 屯稅誅求가 겹치게 되면 屯民(農民)經營이 더욱 破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屯田所在官에서 收稅上納하는 A型屯田에 관하여 살펴 보았으나, 다음으로 各營·衙門에서 管理人을 두어 경영하는 B型屯田의 管理收稅關係를 살펴본다.

屯田管理人으로는 官衙에 따라 屯監 導掌 別將 鎮將 幹事 監官 差人 등 그 呼稱이 多樣하였다. 各營·衙門에서는 대개 職員 가운데서 選任한 屯田管理人으로 하여금 執租, 監打 陳·災踏驗, 小作料의 徵收上納, 屯田의 打量, 移作(小作權의 移動), 作人의 동재, 種子의 配付, 淤·堤堰의 補修 기타 屯田經營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執租란 定率小作制에 있어서 每年 秋成時에 地主 또는 管理人의 共同立會 아래 立稻狀態에서 수확고를 査定하여 契約 또는 慣行에 따른 一定率로써 小作料를 매기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를 執卜 執稅 執賭 執穗 看坪 踏驗 檢見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監打란 역시 定率小作制下에 地主 또는 管理人이 打作을 감시하고 一定比率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陳災踏驗이란 定額小作制 즉 賭租(錢)制下에 地主 또는 管理人이 陳廢田과 災害가 우심한 토지를 실지 踏查하여 小作料를 免減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屯田管理人의 業務範圍는 屯田의 규모와 經營方式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共通的인 主要業務는 執稅 監打, 陳災踏驗, 屯稅의 徵收와 그 輸納이다. 이같은 最高管理人 밑에 舍音 庫直 書員 堰直 屯長 등을 두어 管理人의 업무를 補佐케 하는 屯田도 있었는데 이들 下級 管理人은 대개 屯民 가운데서 選任되었다.

各軍門屯田의 管理·經營·收稅關係를 보면 既述한 바와 같이 宮房無土免稅地에는 正祖 元年부터 官收本稅制가 적용되었으나, 軍門의 無土免稅地에는 別將 哨官 등의 직원을 파견하여 收稅하였다. 이들 差送人의 苛斂酷徵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本官 收稅直納制의 실시문제가 누차 논의되었으나 실현된 痕跡을 찾아 볼 수 없다. 無土屯田은 이 시기에 所有權에 接近된 耕作權이 直接生産者인 농민 또는 公法上的 경작자(民田地主)에 있는 民田收稅地이므로, 軍門에서 직접 經營·耕作할 성질의 土地가 아니기 때문에 公稅條로 1結에 米 23斗만 徵稅하면 되는 것이나 실지에 있어 軍門收稅人에 의한 不法濫徵이 감행되었다.

有土免稅地의 管理體制는 多樣하며 事例別로 살펴 보면, 壯勇營 全州·益山屯田의 경우 執稅, 監打, 陳災踏驗, 小作料徵收 및 그 輸納을 비롯한 屯田의 管理經營에 관한 總責任者로서 屯監을 두고 그 밑에 都舍音 舍音 庫直 差使를 두고 있다. 이들 管理人層은 모두 屯民 가운데서 選定하여 每月 所定の 報酬(料租)를 지급하고 있는데, 月當 料租는 屯監이 1石 10斗, 都舍音 1石, 舍音 10斗, 庫直 15斗, 差使 10斗씩으로 定額되어 있다¹³⁾.

江華船頭浦屯田의 경우를 보면, 이 屯田은 江華府 各鎮堡의 應役士卒와 募民을 佃戶(作人)로 삼고, 各鎮에서 收稅하여 鎮邊將과 立役士卒의 月料 등의 경비를 支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各鎮堡에서는 次知를 派送하여 收稅하고, 屯民가운데 別將을 選定하여 屯

12) 備邊司謄錄 純祖 14年 7月 5日

13) 全州益山所在屯土節目(壯勇營)

土管理, 屯民의 통제, 耕作의 감독 등 제반의 업무를 맡게하며, 또한 別將 밑에 堰直 2名을 두어 堤堰管理를 전담케 하였다. 別將과 堰直에 대한 報酬條로 前者에 位田 4石落只, 後者에 2石落只를 주어 小作料를 免除해 주고 있다¹⁴⁾.

英祖 12년에 訓練都監 및 糧餉廳의 瓮津·海州屯田을 併合하여 訓練都監에서 專管케 하였는데 이 때에 作成한 「瓮津別將節目」에 따르면 屯田管理人으로서 任期 2年の 別將을 屯田에 定送하되 別將은 知戢官 旗牌官 중에서 選任키로 하였다. 派送되는 別將은 屯土의 管理, 耕作의 監督, 執租, 陳災踏驗, 小作料의 徵收·上納 등 屯土經營에 관한 全般的인 業務를 分管한다. 그리고 作人 중에서 屯長 書員 庫子를 選定하고 別將을 補佐하며 屯土經營에 관한 諸般實務를 담당케 하였다. 이들 管理人들에 대한 報酬는 別將과 將무를 담당하는 奴僕(1名)에게 料租 1石씩을 지급하고 屯長 書員 庫子에 대해서는 田結復戶 즉 大同稅를 免除해 주었다¹⁵⁾. 華城府長與屯田에는 管理責任者인 都監官 1名과 그 밑에 面單位로 舍音 3名을 選任하고 이들에 대한 報酬條로 都監官에 5斗落 舍音에게는 3~4斗落의 耕作地에 小作料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들 管理人은 모두 作人으로써 구성되고 있다¹⁶⁾. 그리고 自耕屯田인 前述한 江界府防軍屯田에는 防卒 가운데 都監官 1名을 選출하여 屯土의 經營을 分管케 하고 그 밑에 10名의 監官을 두고 있다¹⁷⁾.

이밖에 奉章閣의 有土屯田에는 每年 秋收期에 직원(屬屬)을 派送하여 收稅하며,

本閣屯土 本是給價買得 定稅收捧者也 此與無土免稅有異 依前下送閣屬收捧之意 分付該道何如上曰 依爲之¹⁸⁾

訓局金川屯田에는 屯監(別將)을 差送하여 收稅하고 있으며¹⁹⁾, 糧餉廳·耆老所소속 丹陽·堤川屯田에는 한때 導掌을 派送하였고, 成均館에서는 差人(職員)을 派送하여 屯稅와 奴婢貢을 收稅하며²⁰⁾ 守禦廳關東屯田에는 屯監, 壯屬營 平安道屯田에는 幹事, 耆老所 興陽屯田에는 差人, 訓局·摠戎廳의 朔寧屯田에는 屯監을 각각 派送하여 收稅하고 있다.

14) 肅宗年 33年 11月에 作成한 江華府船頭浦新堰節目의 주요부분을 拔萃紹介해 둔다.

- 一. 築堰時 看役牌將中折衝韓啓重 爲人勳幹 仍差該堰別將後 東西邊堰直各一人 使別將 極擇有根着可合人 望定差出 使之看護爲白齊
- 一. 本府各鎮堡 俱在浦邊 士卒既無耕食之地 生理涼薄 勢難安接 自兵曹 雖有逐朔給布之規 亦不足以資活 而在經費 則實有難繼之患 今此堰內田畝 均一劃給於各鎮堡 使其鎮下士卒 亦各均執 該鎮邊將 看檢勸課 收稅需用 則可除士卒給代之費 可補邊將糜料之資
- 一. 前略 侍畢起耕後 均一劃給土地於各鎮堡 使該鎮次知收稅
- 一. 別將堰直逐朔給料 勢有所難는 白去乎除出堰內畝八百只 稱以別將堰直位田 別將則四石落只 兩堰直各二石落只 減稅永給以爲替傳 次知耕食之地爲白齊
- 一. 牛隻及農器 使別將募得勸實力農之人 看檢耕種 俾無可耕處荒廢之患爲白乎 所收穀物段 以其三分之一 許給耕作者 其餘段 一體會錄爲白齊(備邊司臚錄 肅宗 33年 11月 19日)

15) 「瓮津別將節目」

- 一. 訓局·糧餉廳所屬瓮津·海州兩屯 合爲一屯 以訓局執事 自辟差送別將事 定奪爲白有 有 如乎 別將自辟 從久勸次第 以知戢官 旗牌官……受煎差下 限二周年瓜違 一如黑山島別將例 永爲定式爲白乎矣
 - 一. 屯所屬下人畝置 亦以曾前屯長·書員·庫子輩 仍爲使役爲白乎矣 依前例只給復戶 官穀中別料勿爲磨鍊以除耗費之弊爲白乎矣
- 日. 兩屯合設一別將 則別將料租段 依曾前定例 每期一石式上下爲白乎稱 奴料段 以一處別將料租一石 移施上下爲白乎矣(備邊司臚錄 英祖 12年 1月 25日)

16) 華城府買得長興所在屯畝賭租捧上冊(正祖 20年)

17) 增補文獻備考 田賦考 5, 江界防軍屯田節目

18) 備邊司臚錄 純祖 11年 3月 14日

19) 備邊司臚錄 正祖 11年 4月 17日

20) 備邊司臚錄 英祖 13年 11月 12日

營衙門에서 差送하는 屯監 別將 導掌 差人 幹事 등의 거의 대부분이 당해관아의 職員이 나 그 중에는 간혹 外部民間人도 있었다. 즉 소위 「市井無賴之輩」가 屯監 또는 導掌으로 되어 屯土의 管理收稅의 任務를 담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A) 各衙門屯田之弊…屯監則率是屬 闌無賴之輩唯以肥己爲事寧有爲國愛民之意哉²¹⁾

(B) 各官房衙門免稅之規 勿論有土無土 邑邑皆有 差遣市井無賴之輩 謂之導掌²²⁾

이들 屯監 別將 導掌 差人 幹事 등 京差人은 秋成期에 파송되며, 執租, 監打, 陳災踏驗 小作料의 징수 및 그 輸納이 주된 임무이며, 耕作을 감독하면서 경영문제를 관장하는 일은 現地の 監官 舍音 別將 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屯土에는 現地管理人을 두지 않고 秋成期에 屯監 등을 파송하는데 그쳤다. 이상 論究한 바와 같이 屯土의 管理方式은 ① 有土 無土, ② 自耕 他耕, ③ 軍門 衙門, ④ 屯土의 규모 등에 따라 多樣하다. 부연하면 上級管理人으로서 屯監 導掌 別將 鎮將 都監官 差人이 있으며, 이들의 身分은 營·衙門의 職員 奴子로부터 屯所의 軍兵, 外部民間人에 이르기까지 多樣하며, 이들의 業務範圍도 秋成期에만 屯所에 파송되어 監打, 執租, 陳災踏驗, 徵稅 上納의 과정을 담당하는 部類와 屯所에 常住하면서 下級管理人을 指揮하고 屯民을 통제하면서 屯田經營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屯稅의 徵收·上納過程을 담당하는 部類가 있다.

어쨌든 屯田監理人인 이들 屯監 導掌 幹事 差人들은 官權을 배경삼아 作人을 威脅하면서 陳結收賭를 비롯한 苛歛虐徵을 감행하고 있다.

欄外에 소개하는 記事에서 보는 바와 各衙門·各官房의 差人·導掌輩는 當年災結과 流來陳田에도 일률적으로 屯稅를 부과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各軍門의 民結收稅地에도 差送되는 別將 또는 哨官이 苛歛虐徵을 자행하여 軍門에 바치는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私囊을 채우는데 充當되고 있다²³⁾.

IV. 屯田農民의 地位

봉건적 土地國有制下에 土地保有權이 強化되어 世宗 6년에 保有權 즉 耕作權의 賣買가 公認된 결과 民田으로 불리는 保有地에 있어서 地主·小作關係의 형성이 合法化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保有權의 強化가 봉건적 土地國有制의 剝奪을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 李朝 國家는 대체로 19세기말 甲午改革에 이르기까지 上級所有者로서의 地位를 確保하고, 農民을 如前히 農奴의 支配하고 그들의 剩餘生産物 또는 勞動을 地代=租稅로서 收取하였다. 그런데 壬辰亂 이후 급격히 진행된 農民層의 分解過程에서 保有地(民田)에 있어서 地主·小作關係가 급속히 발전해 갔고, 이같은 民田의 生産關係의 變化는 餘地種目的 土地에도 波及되어 이 시기에 設定된 宮庄土와 屯田에도 地主·小作關係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시기에 民田小作地에 있어서 地主·小作關係에는 직접적인 支配隸屬關係가 극히 微弱하였고, 民田小作農民을 오히려 上級地主인 國家에 隸屬되어 農奴의 束縛과 거의 無定

21) 備邊司謄錄 肅宗 14年 11月 5日

22) 英祖實錄 卷 118, 48年 6月

23) (A) 各衙門·各官房屯稅之入於災頃處 差人輩比摠勒徵 誠極痛駭(備邊司謄錄 英祖 34年10月26日)

(B) 各官房·各司·各營屯土之在於列邑者 每年秋成時 各該導掌 依例下來 執稅時 無論陳廢與否 一并執摠 災實之間 不有民論 威喝推剝 期欲充欲乃己 故小民莫敢誰何(憲宗 5年 4月 25日)

(C) 各軍門設屯處 皆是收稅於民田者 而或差別將 或定送哨官 使之執卜收稅 則此輩 專以苛歛虐徵 爲主 民受其弊 利歸私囊 其所營納極其零星 瘠公肥私 莫此爲甚(備邊司謄錄 肅宗 3年 1月

限的 收奪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宮庄土나 屯土의 小作農民은 民田小作農民과는 달리 土地支配者인 宮房 또는 各營·衙門의 支配隸屬下에 있었다. 宮房은 宮庄土의 佃戶를 經濟外的 強制로써 支配하였다. 이를테면 導掌이나 宮差와 같은 庄土管理人이 佃戶에 人身拘束을 가하고 規外濫徵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宮房과 佃戶를 兩極으로 하는 地主·小作관계에 封建的 支配隸屬관계가 成立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⁴⁾. 屯田에 있어서도 地主·小作관계에 經濟外的 強制에 의한 人格束縛이 수반되었다. 즉 屯田農民은 封建的 支配隸屬關係아래 收穫高의 折半에 달하는 高率地代와 그 밖에 規外濫徵을 強要당하는 農奴의 存在였다. 屯監 差人 등 屯土管理人이 陳結·災結收賂 高價作錢²⁵⁾을 비롯한 苛斂酷徵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屯田地主(營·衙門)와 屯民간에 支配·被支配를 基軸으로 하는 身分的 隸屬관계가 成立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耆老所와 壽進宮興陽屯田에 屯民이 小作料를 즉각 備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差人輩가 板獄의 酷刑을 加하는 것이라던가,

諸宮家·各衙門差人之作弊民間 誠爲孔慘 臣過興錫時 聞壽進宮·耆老所差人 以收稅來到 若不越即納 則作板獄 其中僅容起立 不得坐臥 實有立死之慮 故民人輩 盡賣田土資產 竭力備納 仍致流散 如此酷刑 曾所未有²⁶⁾

앞서 分析한 「黃海道鳳山郡 三屯番打作定式節目」에 作人이 任意로 刈食하거나, 그 밖에 地主에 抗拒할 때 本官 또는 營門에서 嚴懲한다는 條項을 設定하고 있는 것은²⁷⁾ 屯田農民이 土地支配者인 營·衙門에 經濟外的 強制에 緊縛되고 있는 사실을 立證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民田小作地에 있어서 地主·佃戶關係가 經濟關係를 主軸으로 하고 있는데 反하여 宮庄土나 屯田에 있어서 地主·佃戶간에는 強固한 支配 隸屬관계가 成立되고 있는데 兩者간의 이같은 差異는 土地支配關係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民田小作地는 下級所有權인 保有權 즉 耕作權의 賃貸地로서 上級所有權者인 國家에 地代(租稅)를 부담하는 公田이기 때문에 民田小作農은 上級所有者인 國家에 隸屬된 農奴의 農民으로서 存在하게 되고, 民田地主 對 小作人과의 關係에는 經濟外的 強制——身分的 隸屬관계는 비교적 微弱하고 經濟的 關係가 主軸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宮房과 各營·衙門의 有土免稅地는 民田小作地와는 그 性格이 다르기 때문에 宮房과 各營衙門은 보다 強力한 土地支配力을 行使할 수 있었다. 宮庄土는 宮房에서 耕作權을 가진 뿐 아니라, 國家로부터 收租權도 위양받은 土地이다. 그러므로 宮房은 有土免稅地에 대해 收租權者 및 耕作權者로서 強力한 土地支配力을 行使할 수 있었던 것이다. 宮庄土의 이같은 性格에 의거하여 宮房과 庄民간에 支配隸屬관계가 成立되었다.

各營·衙門의 有土屯田도 當該官衙에서 耕作權을 가진 官有地이고, 또 그 대부분이 結稅가 免除되고 收租權이 官衛에 위양된 土地이다. 그러므로 各營·衙門은 宮房과 같이 屯田에 대한 耕作權과 收租權을 가진 地主이다. 더구나 各營·衙門은 最高地主인 國家의 分身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屯田의 실질적인 所有者라 할 수 있다. 屯田의 이같은 性格(所有

24) 金容燮교수는 司宮庄土의 分析에서 直營地와 委託地를 막론하고 宮房·佃戶간에 封建的 支配隸屬관계가 成立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25) 本色徵捧之外 如或作錢 則每石時價 假令爲四五兩 則勒定七八兩 督迫收捧 逐年爲常(備邊司謄錄 憲宗 5年 4月 25日)

26) 備邊司謄錄 英祖 即位年 12月 29日

27) 每於秋成後 自屯所未執卜 未監打前 任自刈食之類 隨其屯監所報 自本官捉囚嚴治 其中甚者 又自本官報營門照律嚴懲爲齊(黃海道鳳山郡所在帽山·沙院·舍人三屯番 打作定式節目)

作人中 如有頑拒不遵者 自本官隨懲治爲齊

(同上)

關係)을 기조로하여 營·衙門과 屯民간에 經濟外的 強制——封建的 支配와 隸屬의 관계가 成立되었던 것이다.

各營·衙門屯田은 甲午更張期の 稅制改革으로 免稅의 特典이 철폐되고, 또 戶曹 이외의 各官衙에서 屯土에 부과하는 小作料(地代)를 모두 賭租라 불렀다. 그리고 各屯土는 高宗 33년에 各營·衙門이 改廢됨에 따라 度支部 宮內部 軍部 등의 관리를 거쳐 同 35년에 驛土 宮庄土 및 屯土를 모두 驛土라하여 宮內部 內藏院의 관리하에 두었다. 宮內部에서는 每年 秋成期에 各道에 收租官을 파견하여 小作料를 징수하였는데 收租官에 의한 中間收奪의 피해가 심했다. 이 시기에 各府郡에는 都舍音, 面 또는 洞에는 舍音을 두고 小作人의 감독, 小作料徵收 등 屯土管理에 관한 制限업무를 담당케 하였는데 이들에게는 報酬가 지급되었다. 宮內府管理時代의 小作形態에는 分半打租, 執賭²⁸⁾(대개 收穫高의 1/3) 및 定賭가 있었으나 打租法이 우세하였다. 純宗 2년에 驛土 屯土 官庄土를 모두 國有에 歸屬시켜 度支部에서 관리케 하고, 이 때 마련한 「驛屯土管理規定 及 小作料徵收規定」에 따라 관리하였는데 그 規定의 主要骨子는 小作料의 定額金納制, 5年定限의 小作契約制, 收租官과 舍音의 폐지 등이다. 이같은 과정으로 國有로 귀속된 驛屯土는 그 후 日本人들의 侵奪對象이 되었다.

結 言

經國大典 刊行으로부터 壬辰亂에 이르는 기간에는 軍兵의 노동으로 경작하는 약간의 軍屯田과 地方官府에서 人吏·官奴의 노동으로 경작하는 官屯田이 있었으나, 壬辰亂 이후에는 中央과 地方의 各級官府에서 널리 屯田을 設置하였고 또한 屯田의 經濟關係——所有·經營·分配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經亂後 各軍門·各衙門에서 屯田을 널리 설정하게 된 社會經濟的 要因은 財政窮乏과 紀綱의 弛緩이다. 屯田은 주로 閑曠地의 折受開墾 民田買入, 屬公田折受 등의 方法으로 設置되었다. 經亂後 진행된 營·衙門屯田의 급격한 膨脹은 國庫(戶曹)歲入의 감축과 民田奪占을 비롯하여 社會經濟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屯田濫設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肅宗 14년에 官房과 더불어 營·衙門에 대한 土地折受制를 혁파하고, 英祖 34년에는 屯田을 免賦出稅地로 하여 大同은 免稅되되 田稅는 부담토록 하였다. 屯田抑制策으로서 단행된 戊辰(肅宗 14年)折受革罷 이후 設屯方法이 종전의 折受制에서 買土制로 전환하였으나, 買土設屯에도 民田強買 등의 피해가 수반되었다. 民田收稅地인 無土屯田에는 托托民田과 募入民田이 있으나, 어느 것이나 농민이 保有耕作하는 民田이므로 公田收稅率에 따라 結當 23斗의 結稅를 득하는 收稅地에 불과한 것이다. 營·衙門 無土屯田의 收稅方法에는 屯土所在郡縣에서 收稅·上納하는 경우와 營·衙門에서 別將 書吏 등의 職員을 파견하여 收稅하는 경우가 있다. 有土屯田은 閑曠地의 折受, 民田買入, 屬公地 折受 등의 方法으로 設되는 것이므로 當該營·衙門이 耕作권을 가지게 되는 官有地의 일종이다. 그러나 前代와는 달리 各級官府에서 有土屯田을 直營地로서 自耕하는 경우는 히 드물고 그 대부분이 小作制經營方式으로 耕作하였다. 이 有土屯田의 公定小作料는 畝 1結에 200斗, 田 1結에 100斗였으나 이 定이 지켜지지 않았다. 屯土의 小作形態는 17세기까지는 二分取一하는 打作法(打租法) 즉 定率小作制가 우세하였다. 農민의 抗租運動으로 18세기 이후에는 定額小作制인 賭地法이 우세하게 되었다. 一定額의 賭租 또는 賭錢을 징수하는 賭地法에 있어서 地代率이 出高의 1/3이라고 하지

28) 執賭는 定率小作制의 한 形態로서 作物成熟期에 地主·小作人의 共同自會下에 收穫高를 査定하고 慣習上 또는 契約上 定率에 따라 小作料를 決定하는 것이다.

마는, 種子 水稅 雜費를 小作人이 부담하므로 실질부담율은 1/2에 가까웠고, 이밖에 屯監 差人 등으로 불리어지는 屯土管理人에 의한 濫徵의 폐해가 막심하였다.

屯田에는 屯監 導掌 別將 監官 差人 幹事 鎭將 등으로 부르는 責任管理人을 두고 그 밑에 舍音 庫直 書員 堰直 屯長 등을 두어 管理人을 補佐하여 末端實務를 맡게하였다. 管理人은 대개의 경우 당해관부의 職員중에서 選任되며, 그들의 주요임무는 執稅(小作料의 査定), 監打(打作的 감시와 분배), 陳·災結踏驗, 小作料의 징수·上納, 屯土의 打量, 移作(小作權의 移轉), 小作人統制, 種子配付, 汎·堤堰의 補修에 관한 業務이다. 屯土管理人은 小作料의 濫徵, 陳·災結收賂를 비롯한 가혹한 屯民收奪을 자행하여 막대한 中間利得을 취득하였다.

營·衙門屯土에 있어서 地主·小作人間에는 民田小作地와 달리 堅固한 支配隸屬관계가 形成되고 있었다. 甲午改革期에 屯田은 度支部 宮內部 軍部 등의 관리로 이양되었다가 高宗 33년에 宮內部內藏院으로 이속되고 다시 純宗 2년에 國有로 귀속되어 度支部 관리하에 놓여졌으나, 日帝侵略期에 日本人地主들의 侵奪對象이 되었다.